

목 차

1. 평창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8
2. 무장공비침투피해지역지원대책촉구에관한건의안	40
3. 대관령관광특구지정의변경을바라는건의안	46
4.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3
5. 평창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 조례안	60
6. 평창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	64
7. '96하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계획및결과·처리계획	86

평창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

의안 번호	100
----------	-----

발의년월일 : 1996. 10.

발 의 자 : 유돈문 의원

외 6인

주 문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평창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대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출석을 요구한다.

가. 출석요구일자 : '96. 11. 4 ~ 6(3일간)

나. 출 석 대 상 : 군수, 부군수, 농촌지도소장, 기획감사실장, 민원봉사실장, 내무과장, 재무과장, 지역개발과장, 관광문화과장, 지적과장, 복지과장, 환경보호과장, 농정과장, 상공과장, 축산과장, 산림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보건사업과장, 사회지도과장, 기술보급과장 (22 명)

제안이유

군정업무 전반에 관하여 의회의 대집행부 질문과 집행부측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군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과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평창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함.

출 석 요 구 서

출석일시	출 석 대 상 자	출석이유
'96. 11. 4(월) 10:00	○ 군수, 부군수, 농촌지도소장, 기획감사실장, 민원봉사실장, 내무과장, 재무과장, 지역개발과장, 관광문화과장, 지적과장, 복지과장, 환경보호과장, 농정과장, 상공과장, 축산과장, 산림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보건사업과장, 사회지도과장, 기술보급과장(22 명)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96. 11. 5(화) 10:00	“	“
'96. 11. 6(수) 10:00	“	“

무장공비침투피해지역지원대책추구에 관한 건의 의 건 안

의안 번호	101
----------	-----

발의년월일 : 1996년 10월

발 의 자 : 우강호 의원

외 6인

1. 주 문

산자수명한 우리 평창군 지역은 오대산 자락을 시작으로 명산대찰이 자리한 천혜의 관광지로 그 명성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천혜의 자원을 우리 평창군민들은 미래의 터전으로 아끼고 보전해 오면서, 굽이치는 산하에서 순후하게 이웃간의 정리 정담을 나누어 왔었으나, 지금으로부터 27년전 울진·삼척지구 무장공비 침투로 평화롭던 마을이 한순간에 공포로 변해 버리고 말았던 아픈 기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이승복 어린이 일가와 같은 참상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고자 그 어느 지역보다 반공정신으로 철저히 무장이 되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9. 18일 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으로 인하여 또 한번 잊혀져가는 악몽에 시달리고 있으니, 이 얼마나 애통할 노릇이었겠습니까?

그로 인하여 우리지역 주민들의 인적, 물적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사태에 이르렀고,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통금으로 인해 전 업종에 걸쳐 극심한 경기침체가 한달이상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난 10월 8일에는 오대산 국립공원 일대로 버섯 채취를 나갔던 마을주민 3명이 또다시 공비들에게 참변을 당하는 등 이로 인해 지역경기는 더욱더 침체의 나락으로 빠져들어 당분간 회복되기가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정부차원의 조속한 지원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참담한 실정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군 지역의 피해내역을 보면 무장공비 침투이후, 군내 농업, 관광서비스업 등 전 분야의 매출손실액이 10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지만, 이것은 단지 겉으로 드러나는 조사가 가능한 분야의 손실일 뿐 임산물채취 중단, 산간마을의 영농활동 지장, 관광객 감소로 인한 상대적인 손실 등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분야를 감안한다면 그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이 주지의 사실인 것입니다.

물론, 정부차원의 조속한 지원이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으나, 아직까지 피해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우리 평창군의회에서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보상대책을 염원하는 전 주민들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은 지원대책을 건의하오니, 아낌없는 정책적 지원을 바랍니다.

첫째, 농·축산농가에 융자된 각종 자금의 상환연기와 추가지원을 해주어야 합니다.

무장공비 침투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관광수입 감소, 이와 맞물려 감자, 당근, 고랭지 채소 등 농산물 값의 큰폭 하락은 극심한 소득감소를 초래하여 급기야는 각종 융자금을 제때에 상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에, 일정기간 상환기간을 연기해 줌은 물론, 장기 저리자금의 지원확대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둘째, 생업자금과 학자금의 현실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침체된 지역경기의 회복을 위해 긴급자금이 지원되고는 있으나, 사실상 담보가 없으면 대출이 불가능하므로, 대출조건의 완화와 함께 대출금리의 인하, 장기저리의 융자, 지원대상의 확대, 그리고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학자금 지원 등 현실여건을 직시한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셋째, 국비보조 내지는 특별교부세 증액 등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반적인 지역경기 침체로 인하여 각종 공과금의 적기 납부가 어렵고, 이로 인한 지자체 재정수입의 감소로 건전한 재정운영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하므로, 지방재정 보전차원의 국비 추가보조 내지는 특별교부세 증액 등 피해지역 지자체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무장공비 침투로 인한 피해지역 주민의 아픔과 고통을 토로 하오니, 국가적인 비상사태로 말미암아 큰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손실보상의 각도에서 현실적인 지원이 이루어 지도록 청부차원의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2. 제안이유

지난 9.18 강릉 무장공비 침투와 10. 8일 오대산 국립공원 일대의 무장 공비 출몰로 인하여, 군부대의 공비소탕작전이 장기국면으로 흐르게 되자, 이로인한 군 관내 농업, 관광서비스업 등 전분야에 걸친 인적·물적 피해가 이루 해야될 수 없이 커지게 되면서 지역경제의 극심한 침체로 생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므로, 침체된 지역경기의 회복과 피해지역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정부차원의 보상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관계기관으로 건의하기 위한 것임.

무장공비 침투피해지역지원대책촉구에 관한 건의문

산자수명한 우리 평창군 지역은 오대산 자락을 시작으로 명산 대찰이 자리한 천혜의 관광지로 그 명성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천혜의 자원을 우리 평창군민들은 미래의 터전으로 아끼고 보전해 오면서, 굽이치는 산하에서 순박하게 이웃간의 정담을 나누어 왔었으나, 지금으로부터 27년전 울진·삼척지구 무장공비 침투로 평화롭던 마을이 한순간에 공포로 변해 버리고 말았던 아픈 기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이승복 어린이 일가와 같은 참상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고자 그 어느 지역보다 반공정신으로 철저히 무장이 되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9. 18일 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으로 인하여 또한번 잊혀져가는 악몽에 시달리고 있으니, 이 얼마나 애통할 노릇이었겠습니까?

그로 인하여 우리지역 주민들의 인적, 물적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사태에 이르렀고,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통금으로 인해 전 업종에 걸쳐 극심한 경기침체가 한달이상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난 10월 8일에는 오대산 국립공원 일대로 버섯 채취를 나갔던 마을주민 3명이 또다시 공비들에게 참변을 당하는 등 이로 인해 지역경기는 더욱더 침체의 나락으로 빠져들어 당분간 회복되기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정부차원의 조속한 지원을 요구할 수 밖에 없는 참담한 실정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군 지역의 피해내역을 보면 무장공비 침투이후, 군내 농업, 관광서비스업 등 전 분야의 매출손실액이 10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지만, 이것은 단지 겉으로 드러나는 조사가 가능한 분야의 손실일 뿐 임산물채취 중단, 산간마을의 영농활동 지장, 관광객 감소로 인한 상대적인 손실 등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분야를 감안한다면 그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이 자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물론, 정부차원의 조속한 지원이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으나, 아직까지 피해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우리 평창군의회에서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보상대책을 염원하는 전 주민들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은 지원대책을 건의하오니, 아낌없는 정책적 지원을 바랍니다.

첫째, 농·축산농가에 융자된 각종 자금의 상환연기와 추가지원을 해주어야 합니다.

무장공비 침투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관광수입 감소, 이와 맞물려 감자, 당근, 고랭지채소 등 농산물 값의 큰폭 하락은 극심한 소득 감소를 초래하여 급기야는 각종 융자금을 제때에 상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에, 일정기간 상환기간을 연기해 줌은 물론, 장기 저리 자금의 지원확대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둘째, 생업자금과 학자금의 현실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침체된 지역경기의 회복을 위해 긴급자금이 지원되더라도, 사실상 사실상 담보가 없으면 대출이 불가능하므로, 대출조건의 완화와 함께 대출금리의 인하, 장기저리의 융자, 지원대상의 확대, 그리고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학자금 지원 등 현실여건을 직시한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셋째, 국비보조 내지는 특별교부세 증액 등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반적인 지역경기 침체로 인하여 각종 공과금의 적기 납부가 어렵고, 이로 인한 지자체 재정수입의 감소로 건전한 재정운영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하므로, 지방재정 보전차원의 국비 추가보조 내지는 특별교부세 증액 등 피해지역 지자체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무장공비 침투로 인한 피해지역 주민의 아픔과 고통을 토로하오니, 국가적인 비상사태로 말미암아 큰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손실보상의 각도에서 현실적인 지원이 이루어 지도록 정부차원의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1996년 11월

평 창 군 의 회 의원 일동

대관령관광특구지정의 변경을 바라는

건의안

의안 번호	102
----------	-----

발의년월일 : 1996년 10월

발 의 자 : 우강호 의원
외 6인

1. 주 문

천혜의 자연경관이 수려한 평창군은 오대산국립공원을 중심으로 한 주변 고원지역에 스키장, 골프장, 관광숙박시설, 청소년수련장, 고원목장, 전통사찰, 문화재, 계곡, 등산로 등 사계절 다양한 관광자원을 지니고 있어 연간 900여만명의 국내외 관광객이 찾아오는 곳입니다.

그러나 개발여건이 취약한 산간고랭지인 관계로 언제나 정부차원의 개발대상에서 소외되어 왔으며, 가격등락이 극심한 고랭지농업의 전망도 불투명한 현실이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 관광산업을 개발하고 육성하는 것이 이 지역의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 생각하여 군민들은 관광특구지정을 염원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평창군에서는 '94년도에 본군 도암면 일원을 한권역으로 관광특구지정을 신청하였으나 외국인 관광객수가 모자라 지정받지 못하였으며, 금년에도 오대산국립공원, 용평리조트, 휘닉스파크, 이승복기념관 등이 소재한 본군의 봉평면, 용평면, 진부면, 도암면 지역 905.39km²를 신청 했으나 면적이 넓다는 이유로 도암면의 용산, 수하, 황계일원 124.61km²와 강릉지역 200.13km²를 단일권역으로 하는 대관령관광특구를 지정한다고 금년 10월30일 예고되었습니다.

이러한 특구지정계획은 지정면적이 일부지역에만 국한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끼치는 영향이 미미할 뿐만 아니라, 평창군의 관광여건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바라는 평창군민의 여망이 반영되지 않은 적절치 못한 결정이므로 반드시 재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연간 외국인 관광객수 10만명이 넘어야 하는 관광특구지정 요건에 훨씬 미달하여 독자 지정이 어렵게 된 강릉시가 외국인 관광객수 10만명이 넘는 우리 군과 강릉-용평 단일권역 지정을 협의할 당시에 평창군에서는 ①지역과 문화의 특성이 다르고 ②건설중인 관광시설이 완공된 후 평창군만의 독자적인 관광특구지정을 계획하고 있다는 반대의사를 '95년3월20일, '96년2월22일 2차에 걸쳐 강원도지사, 강릉시, 강릉시상공회의소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특히,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23조의3에 규정된 관광특구지정 대상 구역은 ①지역안에 각종 관광사업이 분포되어 있어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하고 ②다른 지역과 바다, 산림, 하천, 도로 등에 의하여 명확히 구분되어야 함에도 겨울관광 여건이

취약한 강릉과는 달리 다양한 사계절 관광자원을 지니고 있는 평창 지역 대부분이 관광특구에서 제외되는 점, 그리고 대관령을 경계로 지역이 확연히 구분되고 문화의 특성도 서로 다른 평창(도암)-강릉을 단일권역으로 지정하려는 것은 농촌지역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치 않고 지정면적 축소에만 집착하는 무리한 발상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미 오래전부터 관광특구 지정요건이 우리 군보다 불리하고, 해변관광 특성을 지닌 속초와 여건이 별로 다를 것이 없는 강릉지역 중심으로 관광특구를 지정하려는 것은 관광진흥법의 입법 취지에도 맞지 않으며, 당연히 고원관광 특성을 지닌 평창 중심으로 지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관광산업을 지역주민의 소득과 연계 시키지 못하여 경제적인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우리 군의 실정으로서 지역간의 균형 발전과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책적인 각별한 배려와 지원이 그 어느때 보다도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관령관광특구는 ①대관령관광특구라는 명칭에 걸맞게 고원관광의 특성을 지닌 평창군의 봉평면, 용평면, 진부면, 도암면 등 4개면 지역이 지정되어야 하고, ②평창군과는 지역적으로나 문화적 여건 그리고 관광특성이 서로 다른 강릉지역은 고원관광과 연계될 수 있는 지역만으로 지정면적을 조정해 줄 것을 건의하오니 5만 평창군민의 간절한 소망이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배전의 선처를 바랍니다.

2. 제안이유

우리군은 천혜의 자연경관이 수려한 오대산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주변 고원지역에 사계절 다양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연간 900여 만명의 국내외 관광객이 찾아오는 지역으로써 우리군 지역을 관광산업지로 육성발전시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수년전부터 군민들은 관광특구지정을 염원해 왔으나 지난 10월 30일 문체부에서 우리군의 도암면 일부지역과 강릉지역을 단일권역으로 하는 대관령관광특구 지정에 관한 입법예고를 한 바가 있어 이는 군민들의 여망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적절치 못한 처사라고 판단되어

대관령관광특구는 ①대관령관광특구라는 명칭에 걸맞게 고원관광의 특성을 지닌 평창군의 봉평면, 용평면, 진부면, 도암면 등 4개면 지역이 지정되어야 하고, ②평창군과는 지역적으로나 문화적 여건 그리고 관광특성이 서로 다른 강릉지역은 고원관광과 연계될 수 있는 지역만으로 지정면적을 조정해 줄 것을 건의하는 것임.

대관령관광특구지정의 변경을 바라는 건의 의 문

천혜의 자연경관이 수려한 평창군은 오대산국립공원을 중심으로 한 주변 고원지역에 스키장, 골프장, 관광숙박시설, 청소년수련장, 고원목장, 전통사찰, 문화재, 계곡, 등산로 등 사계절 다양한 관광 자원을 지니고 있어 연간 900여만명의 국내외 관광객이 찾아오는 곳입니다.

그러나 개발여건이 취약한 산간고랭지인 관계로 언제나 정부차원의 개발대상에서 소외되어 왔으며, 가격등락이 극심한 고랭지농업의 전망도 불투명한 현실이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 관광산업을 개발하고 육성하는 것이 이 지역의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 생각하여 군민들은 관광특구지정을 염원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평창군에서는 '94년도에 본군 도암면 일원을 한권역으로 관광특구지정을 신청하였으나 외국인 관광객수가 모자라 지정받지 못하였으며, 금년에도 오대산국립공원, 용평리조트, 휘닉스파크, 이승복기념관 등이 소재한 본군의 봉평면, 용평면, 진부면, 도암면 지역 905.39km²를 신청 했으나 면적이 넓다는 이유로 도암면의 용산, 수하, 황계일원 124.61km²와 강릉지역 200.13km²를 단일권역으로 하는

대관령관광특구를 지정한다고 금년 10월30일 예고되었습니다.

이러한 특구지정계획은 지정면적이 일부지역에만 국한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끼치는 영향이 미미할 뿐만 아니라, 평창군의 관광여건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바라는 평창군민의 여망이 반영되지 않은 적절치 못한 결정이므로 반드시 재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연간 외국인 관광객수 10만명이 넘어야 하는 관광특구지정 요건에 훨씬 미달하여 독자 지정이 어렵게 된 강릉시가 외국인 관광객수 10만명이 넘는 우리 군과 강릉-용평 단일권역 지정을 협의할 당시에 평창군에서는 ①지역과 문화의 특성이 다르고 ②건설중인 관광시설이 완공된 후 평창군만의 독자적인 관광특구지정을 계획하고 있다는 반대의사를 '95년3월20일, '96년2월22일 2차에 걸쳐 강원도지사, 강릉시, 강릉시상공회의소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특히,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23조의3에 규정된 관광특구지정 대상 구역은 ①지역안에 각종 관광사업이 분포되어 있어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하고 ②다른 지역과 바다, 산림, 하천, 도로 등에 의하여 명확히 구분되어야 함에도 겨울관광 여건이 취약한 강릉과는 달리 다양한 사계절 관광자원을 지니고 있는 평창 지역 대부분이 관광특구에서 제외되는 점, 그리고 대관령을 경계로

지역이 확연히 구분되고 문화의 특성도 서로 다른 평창(도암)-강릉을 단일권역으로 지정하려는 것은 농촌지역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치 않고 지정면적 축소에만 집착하는 무리한 발상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미 오래전부터 관광특구 지정요건이 우리 군보다 불리하고, 해변관광 특성을 지닌 속초와 여건이 별로 다를 것이 없는 강릉지역 중심으로 관광특구를 지정하려는 것은 관광진흥법의 입법 취지에도 맞지 않으며, 당연히 고원관광 특성을 지닌 평창 중심으로 지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관광산업을 지역주민의 소득과 연계 시키지 못하여 경제적인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우리 군의 실정으로서 지역간의 균형 발전과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책적인 각별한 배려와 지원이 그 어느때 보다도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관령관광특구에는 ①우리 군의 봉평면, 용평면, 진부면, 도암면 등 4개면 지역 905.39km² 전체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고,
②지역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여건이 서로 다른 강릉지역과는 별도의 권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하오니 5만 평창군민의 간절한 소망이 관철될 수 있도록 배전의 선처를 바랍니다.

1996년 11월

평창군의회의원 일동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98
------	----

제출년월일 : 1996.10.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제안이유

- 행정능률의 향상과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방전산화 계획과 관련 주전산기 도입에 따른 기구조정 및 인력보강과
- 부동산 업무의 효율성제고와 민원편의 증진을 위한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의 관리부서와 민원창구를 일원화함에 따른 관리 인력을 증원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 가. 내무과에 전산업무 전담 係 신설과 관련한 인력 3인(6급 1 7급 1, 8급 1) 순수 증원(안제2조 제1호)
- 나. 지적과에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 처리 인력 1인(7급) 순수 증원(안제2조 제1호)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중 "232"를 "236"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계2조(정원의 총수)평창군의 본청·소속 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본 청 : <u>232</u> 인 2. 의회사무과 : 11 인 3. 직속기관 : 96 인 4. 사업소 : 8 인 5. 읍·면(그 출장소를 포함한다): 237 인 	<p>계2조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본 청 : <u>236</u> 인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살맛나는 강원건설"

강 원 도

우 200-700 강원도 춘천시 봉의동15/(0361)54-2011-2223, 2228 / 전송 담당 직명규

문서번호 자치 12200-1279
 시행일자 1996. 9. (3) (약)
 경유 :
 수신 수신처참조
 참조 내무과장

선결	근수	김영웅	지	
접	일자 시간	1996. 9. 11	시	
수	번호	1083	결	부근수 202
처 리 과	내무과		재	과 장 김영웅
담 당 자	김남국		공	계 장 김영웅
			람	

제목 군 전산기구·인력보강 승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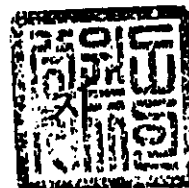
情報通信部長 김

행정의 능률향상과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지방전산화계획에 따라
 주전산기가 도입된 군에 전산업무 기능보강을 위하여 별첨과 같이 기구·인력을 승인하
 관련 자치법규개정등 시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첨부 : 정원승인서 1부. 끝.

강 원 도 지

내무국장 전결



수신처 : 거(07), 더(09 ~ 12, 15, 16, 18)

定員承認書

기관명	직위	직급	정원	비고
횡성군	전산계장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전산주사	1명	
		지방전산주사보	1명	
지방전산서기		1명		
	소계		3명	
영월군	전산계장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전산주사	1명	
		지방전산주사보	1명	
지방전산서기		1명		
	소계		3명	
평창군	전산계장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전산주사	1명	
		지방전산주사보	1명	
지방전산서기		1명		
	소계		3명	
정선군	전산계장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전산주사	1명	
		지방전산주사보	1명	
지방전산서기		1명		
	소계		3명	

강 원 도

우 200-700 강원도 춘천시 봉의동15/(0361)54-2011-2223, 2223 / 전승 담당 최영규

문서번호	자치 12200-1227	선결	각수 최영규	지	
시행일자	1996. 9. 6 (영자)	일차	1996. 9. 07	시	
경유		시간		결	부각수 2007
수신	수신처 1227	번호	9807	계	과장 김명진
참조		처리과	내무과	등	계장 최영규
		담당자	김성국	람	

제목 지적관리 기능보강을 위한 기구·정원승인

※ 建築 또는 地籍 1級 1名

1. 부동산관리업무의 효율성제고와 민원편의 증진을 위하여 토지대장과 건축물 대장의 관리부서 및 민원창구를 지적관리부서로 일원화하게 됨에 따른 지적관리 기구와 인력을 별첨과 같이 승인하네.

2. 관련 자치법규의 개정등 시행에 철저를 기하고 부족인력은 업무이관부서와 자체인력을 활용하는 등 효율적인 인력관리가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정원승인서 1부.

2. 지적부서 기구·인력보강지침 1부. 끝.

강 원 도 지

내무과장 전결



수신처 : 거 41, 더(01 - 18)

정 원 승 인 서

기 관 명	직 위	직 급	정 원	비고
춘 천 시	부동산관리계장	지방지적주사	1명	
원 주 시	부동산관리계장	지방지적주사	1명	
강 릉 시	부동산관리계장	지방지적주사	1명	
동 해 시	부동산관리계장	지방지적주사	1명	
태 백 시	부동산관리계장	지방지적주사	1명	
속 초 시	부동산관리계장	지방지적주사	1명	
삼 척 시	부동산관리계장	지방지적주사	1명	
홍 천 군		지방건축·지적7급	1명	
황 성 군		지방건축·지적7급	1명	
영 월 군		지방건축·지적7급	1명	
평 창 군		지방건축·지적7급	1명	✓
정 선 군		지방건축·지적7급	1명	
철 원 군		지방건축·지적7급	1명	
화 천 군		지방건축·지적7급	1명	
양 구 군		지방건축·지적7급	1명	
인 제 군		지방건축·지적7급	1명	
고 성 군		지방건축·지적7급	1명	
양 양 군		지방건축·지적7급	1명	
계			18명	
※ 정원시행일 : 1996년 9월 5일				

평창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증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3
----------	----

제출년월일 : 1996. 9.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 제안이유

저소득주민에게 장기저리의 융자금을 대여해 줌으로서 실질적인
자립기반 조성 및 자활능력을 배양하고자함

□ 주요골자

- 가. 생활안정자금의 연체이자는 년 8퍼센트로 한다.(안 제6조제2항)
- 나. 생활안정자금의 상환조건은 3년거치 3년균분 상환으로 하고 거
치기간 동안은 무이자로 한다.(안 제6조제3항)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제2항중 "용자금에"를 "소득자금에"로 하고, "가산한다"를 "가산하고, 안정자금에 대하여는 연8퍼센트의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한다"로 하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용자금의 상환조건은 소득자금이 2년거치 2년균분, 안정자금이 3년거치 3년균분으로 한다. 다만, 안정자금에 대해서는 거치 기간 동안을 무이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구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용자한도및이율등) ①가구당 용자한도액은 소득자금은 2천만원 안 정자금은 1천만원으로 한다.</p> <p>②용자금의 대부이율은 연 5퍼센트로 한다. 다만, 상한 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용자금에 대하여는 기금관리를 위탁한 금융기관 (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한다)의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u>가산</u>한다.</p> <p>③용자금은 2년거치 2년 균분 상환으로 한다.</p>	<p>제6조(용자한도및이율등)①—————</p> <p>—————</p> <p>—————</p> <p>②—————</p> <p>—————<u>소득자금에</u>—————</p> <p>—————</p> <p>—————<u>가산하고</u> 안정자금에 대하여는 연 8퍼센트의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한다.</p> <p>③용자금의 상환조건은 소득자금이 2년거치 2년균분, 안정자금이 3년거치 3년균분으로 한다. 다만, 안정자금에 대해서는 거치 기간 동안은 무이자로 한다.</p>

관 계 법 령 발 취 서

□ 地方自治法 第133條【財産 및 基金의 設置】

① 地方自治團體는 行政目的의 達成을 위하여 또는 公益上 필요한 경우에는 財産을 보유하거나, 特정한 資金의 運用을 위한 基金을 設치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財産의 보유, 基金의 設置·運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條例로 定한다.

③ 第1項에서 “財産” 이라 함은 現金외의 모든 財産的 價値가 있는 물건 및 權利를 말한다.

평창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

의안 번호	94
----------	----

제출년월일 : 1996. 9.

제 출 자 : 평창군수

□ 제안이유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로 인한 하천오염으로 인하여 주민보건 및 음용수 사용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시설등의 관리기준 위반행위자 과태료처분 및 분뇨관람영업자의 청소기준등을 정하여 위반행위자로 하여금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일관성있는 행정업무 수행으로 쾌적하고 살기좋은 평창을 가꾸기 위한것임.

□ 주요골자

- 가. 정화조, 오수정화시설,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청소기준(안 제2조, 제3조, 제4조)
- 나. 분뇨의 수집·운반 및 정화조등의 청소대행계약(안 제5조)
- 다. 분뇨 및 정화조, 오수정화시설등의 청소수수료, 사용료징수 등(안 제6조 제7조)
- 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안 제13 - 21조)

평창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화조, 오수정화시설 및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청소) ①군수는 법 제9조, 법 제10조 및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정화시설, 정화조 및 축산폐수정화시설(이하 "정화조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정기청소계획을 수립하여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제3호 및 제4호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청소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청소시기 도래 정화조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및 점유자에게 시설의 내부를 청소하도록 사전통보 하여야 한다.

③정화조등의 내부청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정상가동 되고 있는 오수정화시설 및 축산폐수정화시설의 경우에는 오니저류조의 오니를 그 유효용량별 저류기한이 도래할 때마다 제거해야 하며,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아니한 시설로서 각조의 오수가 부패되고 스크림이 생성된 경우에는 시설내의 모든 부위의 오수 및 오니를 제거한 후 증오니를 확보하여 투입하여야 한다.

2. 분뇨정화조의 내부청소는 부패조의 스크림 및 침전오니(오니제거시 함께 제거되는 오수를 포함한다)를 제거한 후 제거된 오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증오니를 투입하여야 한다.

제3조(부적정 정화조등의 신고) 정화조청소업자는 정화조등의 내부청소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정화조등이 시행규칙 제12조, 제14조 및 제19조의 규정에서 정한 설치기준 또는 관리기준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동조례 제2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청소하였는지의 여부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분뇨의 수집·운반 및 정화조등의 청소대행) ①군수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관련 영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 및 정화조등의 청소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대행계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행구역 및 추정청소량
2. 대행기간
3. 대행수수료에 관한사항
4. 수집·운반차량의 적재 톤수별, 형식별 대수
5.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6.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자는 주민의 분뇨 수집 민원 요청시 24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인의 양해를 받아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자는 법, 영, 시행규칙과 이 조례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수수료, 사용료의 부과징수) ①법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 수집·운반, 정화조청소 분뇨의 처리등에 관한수수료 및 사용료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 다만 분뇨관련영업자가 청소하는 때에는 청소업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1. 분뇨수집수수료는 별표1에 의하여 배출자로부터 수집·운반되는 양에 따라 징수한다.
2. 정화조등의 청소 수수료는 별표2에 의하여 청소된 오니(오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양에따라 징수하거나 정화조시설 용량에 따라 징수한다.
3. 위생처리장(이하 "처리장" 이라 한다)에서 수집된 분뇨 및 오니를 위생처리하는 경우에는 처리장처리비를 분뇨 및 오니의 수집·운반시 배출자별로 계산한 금액에 10원 미만인 있을때는 원단위는 절사한다.

②제1항의 수수료 및 사용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한 경우에는 건축물의 관리자가 있으면 그 관리자에게 일괄부과 징수할 수 있다

제6조(수수료의 감면) 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감면 할 수 있다.

1.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
2.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자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주소·성명·분뇨량 등에 대한 군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군수는 분뇨관련 영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등의 청소를 하였을 때에는 분뇨관련 영업자에게 감면된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분뇨관련영업허가)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관련 영업허가를 받고자 하는자는 군의 관할구역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로 한다.

제8조(분뇨관련 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군수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관련 영업자에 대하여 분뇨관련 영업의 능률향상과 주민편의 도모, 공중위생 청결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연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1. 허가 또는 등록요건 구비 실태
2. 분뇨의 수집·운반·처리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분뇨관련 영업에 수반하는 업무

제9조(처리실적 보고)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관련영업 허가를 받은자는 그 처리실적을 월1회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업무의 위탁등) ①군수는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운영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설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자가 시설장비 노후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이를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의 예정되는 날로부터 6월 이전에 군수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1조(행정위탁) 군수는 인접한 시군의 구역내에서 배출되는 분뇨에 대한 수집·운반 처리 요청이 있을 때는 당해 기관과의 행정협정에 따라 수수료, 수집, 운반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제1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법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부과 징수한다

제13조(청문) ①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권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문에 대하여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83조의 청문절차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과태료 처분통지 등) ①군수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피처분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와 별지 제2호 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과태료의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부터 7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과태료 부과기준) ①군수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②과태료 부과금액은 최고 100만원까지로 하며 항목별 부과기준은 별표3과 같다.

제16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군수의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군수는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강제징수) 군수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자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6조제2항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18조(과태료의 귀속) 수납되는 과태료는 군 수입으로 한다.

제19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등을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준용규정)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평창군세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평창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 및 평창군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는 폐지한다.

[별표1]

분뇨수집·운반수수료요율표

구 분	기 준	계	분뇨수집·운반요금	처리요금
분뇨수집·운반	1ℓ	14원	12원	2원

[별표2]

오수 및 분뇨정화조 청소요액표

구 분	기 준	계	오수및분뇨정화조청소요금	처리요금
오수및분뇨정화조청소	1ℓ	15원	13원	2원

[별표3]

과 태 료 부 과 기 준

부 과 대 상	부 과 금 액 (천 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1. 오수정화시설, 정화조 또는 축산폐수정화시설 (신고대상)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한 자 (법 제5조)			
가. 오수정화시설			
(1) 1일 처리용량이 100세제곱미터 미만인 오수정화시설			
(가) 방류수수질기준 50퍼센트 미만을 초과 한 경우	100	200	300
(나) 방류수수질기준 50퍼센트 이상 100퍼 센트 미만을 초과한 경우	300	400	500
(다) 방류수수질기준 100퍼센트 이상 200퍼 센트 미만을 초과한 경우	500	600	700
(라) 방류수수질기준 200퍼센트 이상을 초 과한 경우	700	800	1,000
(2) 1일 처리용량이 100세제곱미터 이상인 오 수정화시설			
(가) 방류수수질기준 50퍼센트 미만을 초과 한 경우	200	300	400
(나) 방류수수질기준 50퍼센트 이상 100퍼 센트 미만을 초과한 경우	400	500	600
(다) 방류수수질기준 100퍼센트 이상 200퍼 센트 미만을 초과한 경우	600	700	800
(라) 방류수수질기준 200퍼센트 이상을 초 과한 경우	800	900	1,000

부 과 대 상	부 과 금 액 (천 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나. 정화조			
(1) 처리용량이 10세제곱미터 이하인 정화조의 경우	100	200	300
(2) 처리용량이 10세제곱미터 이상인 정화조의 경우	300	400	500
다. 축산폐수정화시설(신고대상)			
(1) 방류수수질기준 20퍼센트 미만을 초과한 경우	100	200	300
(2) 방류수수질기준 2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을 초과한 경우	300	400	500
(3) 방류수수질기준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초과한 경우	500	600	700
(4) 방류수수질기준 100퍼센트 이상을 초과한 경우	700	800	1,000
2.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법 제9조제2항 또는 제10조제2항)			
가. 오수정화시설의 경우	200	500	1,000
나. 정화조의 경우	100	200	500
3. 오수정화시설, 정화조 또는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당해 시설을 사용한 자(법 제11조 또는 제26조)			
가. 준공검사를 받기전에 사용한 경우			
(1) 정화조, 축산폐수정화시설(신고대상)의 경우	200	200	200
(2) 오수정화시설의 경우	300	300	300

부 과 대 상	부 과 금 액 (천 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 (3) 축산폐수정화시설(허가대상)의 경우 나. 준공검사에 불합격판정을 받고도 계속 사용한 경우	500	500	500
(1) 정화조, 축산폐수정화시설(신고대상)의 경우	500	500	500
(2) 오수정화시설의 경우	800	800	800
(3) 축산폐수정화시설(허가대상)의 경우	1,000	1,000	1,000
4. 오수정화시설·정화조·분뇨처리시설 또는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당해 시설의 설계·시공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말건자(법 제 13조제1항 및 제3항, 제22조 또는 제27조)			
가. 정화조, 축산폐수정화시설(신고대상)의 경우	500	500	500
나. 오수정화시설의 경우	800	800	800
다. 분뇨처리시설, 축산폐수정화시설(허가대상)의 경우	1,000	1,000	1,000
5. 오수정화시설, 정화조 또는 축산폐수정화시설을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관리한 자 (법 제14조제2항 또는 법 제28조 제2항)			
가. 방류수수질을 측정하지 아니하거나,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 과 대 상	부 과 금 액 (천 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1) 처리용량 200세제곱미터 이상 정화조 또는 1일처리용량은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오수정화시설은 반기별 1회 이상	100	200	500
(2) 축산폐수정화시설(허가대상)은 분기별 1회 이상	300	500	1,000
(3) 1일처리용량 5세제곱미터 이상인 축산폐수 정화시설(신고대상)은 연1회 이상	100	200	500
나. 내부청소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 처리용량이 10세제곱미터 미만인 정화조 축산폐수정화시설(신고대상)의 경우	100	300	500
(2) 처리용량이 10세제곱미터 이상인 정화조 오수정화시설의 경우	300	500	800
(3) 축산폐수정화시설(허가대상)의 경우	500	700	1,000
다. 처리대상인원 500인 이상인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의 방류수 소독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300	500	1,000
라. 축산폐수배출시설 및 축산폐수정화시설 관리일지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허가대상)	500	1,000	1,000
6. 간이오수정화조의 설치명령을 위반하여 당해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법 제15조제1항)	500	700	1,000
7.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축산폐수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한 자 (법 제24조제2항 또는 제4항)			
가. 허가대상 축산폐수 배출시설의 경우	500	500	1,000

부 과 대 상	부 과 금 액 (천 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나. 신고대상 배출시설의 경우	300	500	800
8. 영업구역, 영업기한 기타 필요한 조건을 위반한 분뇨관련 영업자(법 제35조제4항)			
가. 영업구역 또는 영업기한을 위반한 경우	500	700	1,000
나. 적기에 분뇨를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천재지변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	100	300	500
9. 기준을 초과하여 요금을 받은 분뇨관련 영업자(법 제35조제6항)	300	500	1,000
10. 기술관리인의 선임 또는 개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법 제42조제2항)	300	500	1,000
11. 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00	500	1,000
12. 기술관리인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법 제43조)	500	700	1,000
13. 장부를 기록, 보존하지 아니한 자(법 제44조)	300	500	1,000
14. 휴업, 폐업등의 신고를 아니한 분뇨관련 영업자, 정화조 또는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설계시공업자(법 제45조)	300	500	1,000
15.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법 제46조제1항)	300	500	1,000

- (주) 1. 위반행위가 2이상일때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2. 하나의 부과대상행위가 다른 법률에서도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중 과태료가 가장 많은 금액만을 적용한다.
 3. 위반행위의 회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한도에서 산입 한다.
 4. 방류수수질에 대한 오염물질의 농도 및 제거율의 계산은 소숫점이하 첫째 자리 까지로 한다.
 5. 축산폐수정화시설(허가대상)은 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자가 설치한 축산폐수정화시설을 말하며, 축산폐수정화시설(신고대상)은 법 제24조제4항의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가 설치한 축산폐수정화시설을 말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 호

수 신 :

제 목 : 과태료 처분통지

1. 귀하께서 다음과 같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 조 제 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 위반일시 :

나. 위반내용 :

2.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법에관한법률
제 조 제 호에 의거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경우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첨부 : 과태료납부통지서 1부.

년 월 일

평 창 군 수 인

[별지 제2호서식]

(개인통지용)

제 호 과태료납부통지서		
위반사항:		법
제 조 제 항		
납부의무자	성 명	
	주 소	
과태료금액		

위의 과태료 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평창군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
니다.

년 월 일

수납일부인

평 창 군 수

(수납은행 보관용)

제 호 과태료납부통지서		
위반사항:		법
제 조 제 항		
납부의무자	성 명	
	주 소	
과태료금액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일부인

(군청통보용)

제 호 과태료납부통지서		
위반사항:		법
제 조 제 항		
납부의무자	성 명	
	주 소	
과태료금액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평 창 군 수 귀하

(개인통지용)

제 호 과태료납부통지서		
위반사항:		법
제 조 제 항		
납부의무자	성 명	
	주 소	
과태료금액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일부인

취급자인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과태료납부독촉장			
납 부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의 무 자	③ 주 소		
④ 과태료 납부통지서 번호			
⑤ 위 반 사 항			
⑥ 과 태 료 금 액		⑦ 당초납부기일	
<p style="text-align: center;">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하게 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10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50px;">평 참 군 수 인</p>			

[별지 제4호서식]

계 호

과태료 부과취소(변경)통지서

주 소 :

성 명 : 귀하

① 고 지 금 액	② 최 소 (변경) 액	③ 차 액	비 고

취소(변경) 사유 :

년 월 일

평 창 군 수 인

[별지 제5호서식]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서			
신청인	① 성 명	(한자)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과태료처분내역	④ 부 과 기 준		⑤ 납부통지서번호
	⑥ 고지받은일자		⑦ 과 태 료 금 액
	⑧ 과태료처분사유		
⑨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p>오수·분노및축산폐의처리에관한법률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전절차법에 의 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margin-top: 50px;">년 월 일</p> <p style="margin-top: 30px;">신 청 인 (인)</p> <p style="margin-top: 100px;">평 장 군 수 귀하</p>			

[별지 제6호서식]

제 호

수 신

발 신 평 창 군 수

인

제 목 :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 통보

1.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제 조와 관련입니다.
2.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을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바, 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 제기가 있으니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처분에대한	① 성 명	(한자)	②주민등록번호	
이의제기자	③ 주 소			
과 태 료	④고지일자		⑤ 과태료금액	
처 분 내 역	⑥부과기간		⑦이의제기일자	

- 첨 부 :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사본 1부.

과 태 료 수 납 부

[별지 제7호서식]

① 일련 번호	② 통지서 번호	③ 과 태 료 처분통지일	④ 독촉 장일	납부기한		⑦ 금 액	납부의무자		⑩ 과태료 납부일	이 의 제 기	
				⑤ 당초	⑥ 독촉		⑧ 성명	⑨ 주 소		⑪ 이의제기일	⑫ 법원통보일

관계 법령 발췌서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오수정화시설의 설치)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물 기타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정화조의 설치) ①수세식변소를 설치하는 자는 정화조를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②정화조를 설치 또는 변경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정화조의 설치기준 기타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분뇨의 처리) ①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안의 분뇨를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관련영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⑥시장·군수·구청장은 분뇨를 수집·운반 또는 처리함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25조(축산폐수정화시설의 설치등) ①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자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이하 "축산업자"라 한다)가 당해 축산폐수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함에 있어서는 당해 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방류수수질기준 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하여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설치외의 방법으로 축산폐수의 적정처리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축산폐수정화시설의 설치기준 기타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분뇨관련영업) ①분뇨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나 정화조의 청소를 업(이하 “분뇨관련영업”이라 한다)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등 요건을 갖추어 업종별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52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한 분뇨처리시설·축산폐수처리시설 및 공중변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리·운영을 관리·운영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58조(과태료) ②제25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96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계획 및 결과·처리계획
(기간 : '96.10.23 ~ 11.2. 11일간)

'96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계획 및 결과

평 창 군 의 회

- '96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
현 지 확 인 계 획

- 연중 계획된 군정주요 투자사업이 군민편의 위주로 일관성 있고 효율성있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현지 확인하여 문제점을 도출, 시정·보완 토록 하므로써 군정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가고자 함.

□ 기본 계획

1. 기 간 : '96. 10. 23 ~ 11. 2(11일간)
2. 대 상 사 업
 - 가. '96 주요투자사업중
 - 여론화사업, 고액투자 사업, 환경관련 시책사업등
 - 나. '96 상반기 현지확인시 지적사항 이행 실태(총 31건)
 - 다. 기타 군정주요사업 및 '95수해복구 사업
3. 확 인 자 : 의장외 7인
4. 확 인 반 : 1개반 운영
 - 가. 반 장 : 김낙운 의장
 - 나. 반 원 : 이경진 의원, 유돈문 의원, 이상훈 의원,
이수현 의원, 김두경 의원, 우강호 의원,
김종영 의원
 - 다. 사무보조(직원) : 신교선, 전완택, 이정균

□ 세부시행 계획

1. 확인일정 및 시간계획

가. 확인일정

읍 면	평창읍	미탄면	방림면	대화면	봉평면	용평면	진부면	도암면	비 고
일 정	10.23	11.1	10.31	10.30	10.29	10.28	10.25	10.24	-

나. 시간계획

시 간			활 동 사 항	비 고
부터	까지	소 요		
-	10:00	-	○읍면사무소 도착	-
10:00	11:00	60	○사업추진 상황 보고	주관부서
11:00	12:30	90	○사업장 현지확인	주관부서
12:30	13:30	60	○중 식(현지)	-
13:30	16:00	150	○사업장 현지확인	주관부서
16:00	17:00	60	○현지확인 결과 토의 및 집계	-
17:00	-	-	○종 료	-

※ 평창읍은 10. 23 본회의 종료후 실시

2. 중점 확인 사항

- 가. 사업계획에 의한 추진실태 및 정실시공 이행 실태
- 나. 사업과 관련한 지역주민 여론청취
- 다. 사업장별 지역주민 수해도 분석
- 라. 사업장 마무리 및 사후관리 실태

□ 집행기관 협조사항

1. 사업추진상황 제출 : 서식 별첨 1

가. 대 상 사 업 : 사업목록에 의한 전사업

※ 사업성격에 따라 서식 임의조정 가능

나. 작성 기준일 : '96. 10. 18 현재

다. 제 출 기 한 : '96. 10. 19 한

라. 규 격 : A4복사용지 상철(워드프로세서 작성)

마. 편 철 : 사업별로 실과소, 읍·면 구분하여 표지,
목차, 내용순으로 편철

※ 상반기 현지확인 처리결과는 끝에 편철 : 서식 별첨 2

바. 제 출 부 수 : 14부 (합철 3부, 분철 11부)

※ 기타 사업추진상황 추가설명 필요한 자료 사업장별 첨부

2. 사업현황 설명 및 현지안내

가. 사업장별 현황 설명 : 좌석 배치도 별첨 3

○ 일 시 : 현지확인 당일

○ 장 소 : 읍면장실 또는 회의실

○ 내 용 : 사업장별 세부 추진상황 설명 및 질의·답변

○ 참 석 자 : 의원 및 사무보조직원, 사업주관 실과소장

○ 보 고 자 : 실과소장 및 읍·면장

※ 군 발주사업은 사업소관 분야별로 실과소장 보고, 읍·면
발주사업은 읍·면장이 총괄 보고

○ 진 행

- 개회선언 및 인사(반장)

- 집행기관 보고(실과소장 및 읍면장)

- 질의·답변(실과소장 및 읍면장)

- 마무리 인사 및 종료선언(반장)

- 현지확인

나. 현지안내

- 안내자 : 읍·면장 및 사업주관 실과소장이 안내
- 내 용 : 의원 질의사항에 대하여 설명
 - ※ 사업관련 부서에서는 기본현황 및 설계도 지참하고 필수 안내요원 1인씩만 참석

다. 기타사항

- 현지확인 일정시간포 제출 : 당해 읍·면
- 타기관 시행사업 사전협조 : 자료제공 및 현황설명, 질의·답변등
- 현지확인 기간동안 차량 지원 협조 : 1대

□ 행정 사항

1. 현지활동 자료준비

- 가. 대 상 사 업 : 사업목록에 의한 전사업(별첨4)
 - ※ 사업대상 목록 별도 취합 작성
- 나. 자 료 제 공 : 집행부 대상사업별 추진상황 제공
- 다. 자료제공일 : '96. 10. 21일한

2. 현지이동 차량 대책

- 가. 읍면도착 및 귀가 : 개별
- 나. 차량대책 : 총 3대 소요
 - 의회 승용차량 2대(2144, 7007)
 - 집행부 지프차량 1대

3. 소요 경비대책 : 의원공통경비(목 206-04)에서 집행

4. 기타사항

- 활동상황별 기록유지
- 보조자료 수집 및 확인순서 읍면별 적의성 있게 조정

【 별첨 1 】

○ ○ 사 업

□ 사업 개요

- 시행부서 : 과 읍·면
- 위 치 : 읍·면 리
- 사업규모 :
- 사업비 : 천원(총사업비 : 천원)
 - 국비 : 도비 : 군비 : 자부담 :
- 사업기간 :
- 현공정 : %
- 추진상황

시행(품의)일자	입찰일자	계약일자	계약방법	계약금액(천원)

작공 (예정) 일자	준공 (예정) 일자	설계변경내역(천원)			도급업체	감독 공무원
		일자	증감액	변경금액		

※ 설계변경 사유 :

□ 문제점 및 대책 : 상세하게 기술

【 별첨 2 】

'96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처리결과

사업명 :

시행부서 :

사업개요

○ 위 치 :

○ 사업비 :

○ 사업기간 :

처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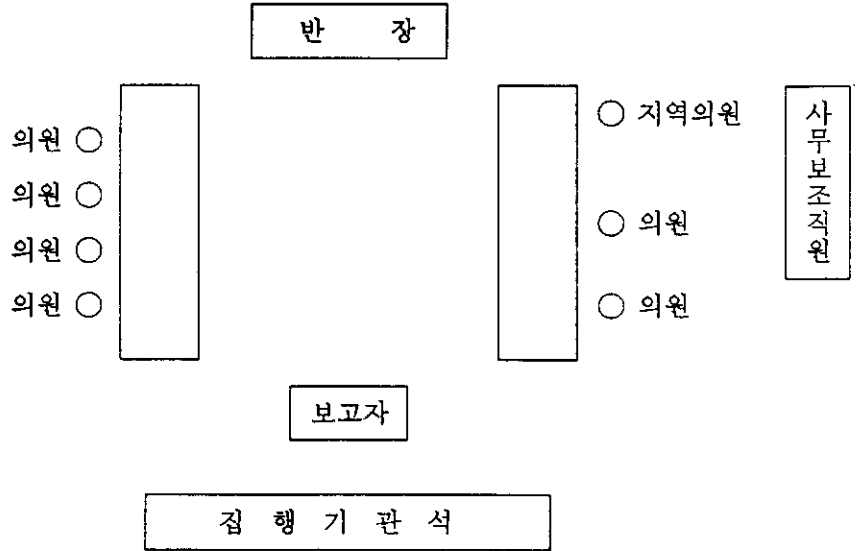
확 인 요 지	처 리 계 획	처 리 결 과	비 고

- 주) 1. 확인요지 : 군의회에서 현지확인 결과 통보내용 기재
 2. 처리계획 : 집행부에서 확인요지에 대한 처리계획 기재
 3. 처리결과 : 처리계획에 대한 지금까지의 추진내용 기재
 4. 비 고 : 완결, 추진중 등으로 구분하고 문제점 사항 기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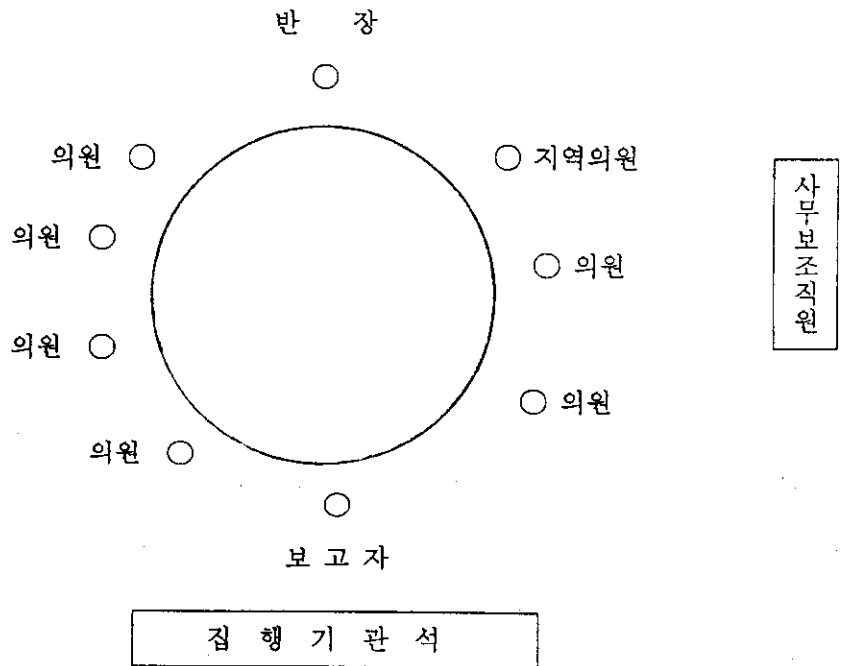
【 별첨 3 】

좌석 배치도

《 사각배열 》



《 원탁배열 》



【 별첨 4 】

군정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대상 목록

총 괄

읍 면 별	확 인 대 상 건 수	비 고
계	71	
평 창 읍	5	
미 탄 면	10	
방 립 면	16	
대 화 면	11	
봉 평 면	6	
용 평 면	11	
진 부 면	5	
도 암 면	7	

□ 확인대상 사업목록(총 70건)

읍 면 별	사 업 명	비 고
<p>평 창 읍 (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평창상수도 취수원 이전 2.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3. 하리~중부간 농어촌도로확·포장 4. 노론~하안미간 군도확·포장 5. 들배나무 육묘장 	
<p>미 탄 면 (1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미탄쓰레기 소각시설 설치 2. 한탄리 농로포장 3. 미탄 창리 농촌오수처리장 설치 4. 창1리 마을안길 포장 5. 산채나물 가공 공장(평안2리) 6. 군도 한탄 ~ 마하간 아스콘포장 7. 백운리 소교량 가설 8. 면 청사 지붕 보수공사 9. 복지회관 지붕 방수공사 10. 피로연장 화장실 신축 	
<p>방 립 면 (1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방림4리 마을안길 포장 2. 방림2리 도수로 정비 3. 방림5리 진입로 포장 4. 방림1·운교3리 마을안길 포장 5. 방림3리 노인회관 건립 6. 운교1리 노인회관 건립 7. 계촌6리 교량가설 8. 계촌6리 마을안길 포장 9. 계촌5리 마을안길 포장 	

읍 면 별	사 업 명	비 고
방 립 면	10. 계촌출장소 진입로 포장 11. 세월교 가설공사 12. 계촌3리 소교량 가설 13. 계촌2리 마을안길 포장 14. 계촌1리 경지정리 15. 계촌5리 군도포장 16. 오지종합개발 사업 - 활육수수, 산채나물 가공 및 저온저장고 시설	
대 화 면 (11)	1. 대화문화마을조성 2. 대화체육관 건립 3. 대화 쓰레기매립장 조성 4. 농어촌도로 확·포장(신2리~신4리) 5. 소규모 교량 재가설(대화7리) 6. 하안미 기계화 경작로 사업현장 7. 하안미2리 농로확·포장사업(교부금 사업) 8. 상안미1리 도수로 9. 하안미3,4,5리 간이 상수도 10. 대화공영주차장 설치공사(대화9리) 11. 신2리 대화산업개발(규석광산)	
봉 평 면 (6)	1. 봉평도읍정비 마무리 2. 남안교 가설 3. 봉평상수도 시설확장 4. 농어촌 마을안길포장 5. 수해복구 공사(면은리) 6. 보광휘닉스파크 골프장 건설	

읍 면 별	사 업 명	비 고
용 평 면 (11)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어촌마을길 포장 2. 소규모 교량 재가설 3. 교통소통대책(용전교 가설) 4. 장평리 도수로 5. 집수관보완 및 여과사 교체 6. 용전리 소형보 보수 7. 속사2리 세월교 마무리 8. 백옥포리 양수시설 9. 용전리 발기반 정비 10. 전원주택단지 조성(재산리, 금당마을) 11. 청소년수련장 조성 	
진 부 면 (5)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간평2리 연립주택(2동) 2. 진부면 광역상수도 시설 3. 오대개발(토석채취) 사업현황 4. 호명리 수해복구 5. 송정1리 수리시설 수해복구 	
도 암 면 (7)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암면 청사 신축공사 2. 황계 시가지 하수도 정비사업 3. 황계 11리 진입로 확·포장 공사 4. 하일랜드 지하층 보수공사 5. 동계 올림픽 추진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왕산 개발, 시가지 배후시설 기반조성 6. 병내리 화훼단지내 문제발생 현황 7. 용산1리 싸리재 농로포장 	

'96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사업장
현 지 확 인 결 과

□ 확 인 개 요

- 주 관 : 평창군의회
- 기 간 : '96. 10. 23 ~ 11. 2 (11일간)
- 대상사업 : 군정 주요투자사업 71개소
- 확 인 반 : 1개반 11명(의원8, 사무보조3)
 - 반 장 : 김낙운 의장
 - 반 원 : 이경진 의원, 유돈문 의원, 이상훈 의원,
이수현 의원, 김두경 의원, 우강호 의원
김종영 의원
 - 사무보조 : 신교선, 전완택, 이정균
- 주요내용
 - 주요사업의 추진실태 및 관리상황
 - 사업장별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분석
 - '96 상반기 현지확인시 지적사항 이행실태
 - 지역주민의 여론청취 및 의정활동의 정보 획득

□ 확인 결과

가. 사업장 현황

○ 총괄

(단위 : 개소)

구분 기관별	총 대상 사업장	확 인 사업장	개 선 보 완 사업장	확인일자	비고
계	71	42	40	-	
평창읍	5	3	3	10. 23	
미탄면	10	4	4	11. 1	
방림면	16	5	5	10. 31	
대화면	11	8	8	10. 30	
봉평면	6	4	3	10. 29	
용평면	11	8	7	10. 28	
진부면	5	5	5	10. 25	
도암면	7	5	5	10. 24	
공통	-	-	-	-	

나. 확인 내용

< 평창읍 >

1. 평창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 교량가설, 설계변경, 물가상승율 등에 의한 사업비 증가가 예상되므로 국·도비 확보를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특별히 요구되고 있으니 가시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임.
- 진입교량, 피로연장 등 설계변경의 조기 확정후 사업비 증가(6,655 ⇒8,000백만원 추정)에 따른 계속비 변경승인이 선행 되어야 함.

2. 돌배나무 양묘사업

- '96년도와 같이 발아 불량으로 인한 사업실패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재발 되지 않도록 '97년도 사업계획은 사전 신중한 검토후 추진해야 할 것임.

3. 하리 - 종부리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 지연되고 있는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의 조기 마무리후 '97년도에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의 적기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미 탄 면 >

1. 산나물, 찰옥수수 가공 및 저온저장시설 공사

- 진입로 및 부지협소에 따른 작업차량 출입장애, 상수도 급수대책 곤란, 특히 작업차량의 주정차 공간 확보를 위한 하천복개, 성토작업에 예산추가 부담이 수반되는 등 당초 시설위치 선정에 신중을 기하지 못한 점이 나타나고 있어, 향후 정상적인 시설운영을 위한 보완대책이 강구 되어야 할 것임.

2. 창리지구 오수처리장 설치

- 기존 하수관로 노후, 오수차집관로 미설치로 상당량의 오수가 하천으로 직접 유입되고 있으므로 오수차집관로 증설이 필요하며 우수 또는 기름등의 오수처리장 유입 차단등 정상가동을 위한 철저한 관리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 향후 오수처리장 설치 사업을 추진 할때는 효율적인 오수차집이 될 수 있도록 하수관로 보완사업이 연계 시행되도록 조치해야 할 것임.

3.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

- 국도에서 분기되는 현재의 비포장 진입로가 노면불량 및 거리가 멀어 청소차량 통행이 불편하므로 구간단축을 위해서 비행기재 터널 부근 국도에서 진입하는 방안의 검토가 요구되고 있음.

4. 영월댐 수물지구 대책

- 영월댐 건설에 따른 수물에 대비하여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수물지구내 각종 부존자원의 군세입원화 개발 추진이 필요하며, 또한 천연기념물인 백룡동굴의 보존 또는 개발 방안에 대한 군차원의 적극적인 조치가 요구되고 있음.

〈 방 립 면 〉

1. 방림4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 공사가 다소 지연되고 있으니 골재확보, 설계변경 등을 조기에 마무리 하여 공기내 완공이 되도록 공정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2. 수동지구 경지정리 사업

- 당초 채토장 선정 잘못으로 들, 마사가 많은 질이 나쁜 객토가 반입되었으며 일부 경지에는 10전 정도밖에 객토가 되지 않아 주민의 불만이 많아 '97년중에 객토의 추가 시행 대책이 필요하며, 미불된 시공업체의 노임, 식대등의 정산조치가 요구되고 있음.

3. 방림 - 계촌 - 둔내간 군도 확포장 사업

- 미 포장구간 (300m)의 조기 시공대책이 요구되고 있으며 향후 시행하는 군도 확포장 사업대상은 객관성 있는 선정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 구간이 선정되도록 해야 할 것임.

4. 계촌교 가설공사

- 시공회사의 공사추진 부진으로 지연되고 있는 공사의 조기 완공을 서둘러야 하며 공기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징수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5. 산나물, 찰옥수수 가공 및 저온저장시설 공사

- 시설준공후 사업목적에 맞게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관리부서의 조정 및 적정한 사후관리 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 대 화 면 >

1. 대화체육관 건립

- 내년도 확보계획인 도비는 전액 확보 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조치하고 현재 시설 중인 주차장 규모 (48대)로는 향후 체육관 활용시 주차난이 예상되니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위해서 주차공간의 추가확보 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2. 대화쓰레기 매립장 조성

-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승인의 조기 마무리 등 사업의 적기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특히 진입로의 경우 현재 계획중인 직선노선은 구배가 심하여 결빙시 청소차 운행이 불가능 하므로 부지를 추가 매입하여 개설 노선을 변경해야 할 것임.

3. 대화산업 토석채취 허가

- 영동고속도로 가시권에 위치한 사업장으로서 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사업장 하단부의 중간복구와 비산먼지 방지 대책 등 지속적 관리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 관계부서의 관리감독 소홀로 골재 무단반출 사례가 발생하여 '96. 6. 21 골재반출량 22,021m³에 대한 폐석료 2,352,000원을 추정하였으나 상당량의 무단반출량이 조사에서 누락되었으니 정밀 재조사후 폐석료의 추정 조치가 필요함.

4. 신2 ~ 4리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 보조기층의 골재는 설계내역에 의한 규격품을 사용하여 완벽하게 시공되도록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임.

5. 대화7리 노후교량 재가설 사업

- 교량입구에 위치한 마을회관이 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으니 철거대책을 강구하고 공기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공사추진을 서둘러야 할 것임.

6. 하안미 기계화 경작로 사업

- 현재 시공중인 노폭(3m)이 좁아 소형차량도 교행이 불가능 하니 4m로 확장해야 하며 총 수로구간 (812m)중 200m 구간만 시공중에 있으나 잔여구간 (612m) 미 시공 시 용수 공급에 차질이 예상되니 마무리 시공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임.

7. 상안미1리 도수로 개수공사

- '96. 5. 6 공사중지 이후 장기간 공사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니 동절기 이전에 완공될수 있도록 공사 추진을 서둘러야 할 것임.

8.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 취수원 위치를 조기 확정하여 공기내에 완공되도록 하고, 특히 관로 매설시 설계상 위치대로 정확히 매설되도록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임.

< 봉 평 면 >

1. 봉평 도읍정비 사업

- 구거, 군유지 불하지연 등으로 지연되고 있는 지장물(9동) 철거를 위하여 군에서 좀더 적극적인 의지와 조치가 필요하며 특히 철거대상 가구가 대부분 영세민임을 감안하여 실질적인 이주대책 등 적절한 대안을 강구 제시하여 사업이 연내에 마무리 되도록 조치해야 할 것임.

2. 남안교 가설공사

- 기존교량의 일부구간이 붕괴되어 차량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니 교량 완공전 까지 차량등의 통행대책이 요구되고 있으며 잔여예산을 차질없이 확보하여 '97년 우기전에 완공 되도록 조치해야 할 것임.

3. 봉평상수도 시설 확장 사업

- 정수장 부지 토지사용승락 협의와 취수원 위치 확정을 조기에 마무리 하여 공정별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야 할 것임.

〈 용 평 면 〉

1. 재산리 소형보 보수공사

- 표면보수를 하지 않은 나머지 구간의 보를 그대로 둘 경우 수해 등에 의한 파손 위험이 있으니 준공전에 보 표면의 마무리 보수가 필요함.

2. 양수시설 설치사업

- 사업비 27,234천원의 도수로 개수공사는 군에서 시행하는 반면 건축, 기계, 전기 등의 복합설계가 필요한 총 사업비 60,000천원 규모의 양수시설 사업을 기술인력이 없는 면단위에서 시행토록 하여 현지확인일('96. 10. 28) 현재까지 설제도 마무리 하지 못하는등 사업 지연을 초래한 것은 반드시 시정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며 특히 본 사업의 경우 사업비 추가 소요시 예산확보 선행후 공사를 착공해야 할것임.

3. 한국청소년수련마을 조성공사

- 청소년수련마을 완공후 향후 시설운영시 부녀단체, 농민단체 등이 직접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 하는등 지역주민의 소득과 연계됨은 물론 지역발전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 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 함.

4. 용평 금당마을 조성사업

- 평창강 상류지역임을 감안하여 총 48동의 전원주택에서 배출되는 오수가 완전히 정화처리 될 수 있는 규모의 오수정화 시설이 설치되어야 하고, 또한 분양완료 후에도 계속 정상가동이 될 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5. 용전교 가설공사

- 한국도로공사와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영동고속도로 4차선 확장공사와 연계한 시공이 되도록 하고, 연내 준공이 되도록 철저한 공정관리가 요구되고 있음.

6. 장평 도수로 개수공사

- '96. 5. 6 공사중지를 하였다가 도수로의 물이 끊기는 9월경에 공사중지 해제를 할 수 있었음에도 '96. 10. 25 공사재개를 하여 사업적기를 놓친면이 있으니 내년도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연내 완공을 서둘러야 할 필요가 있음.

7. 용전지구 밭 기반정비 사업

- 주민과 마찰없이 원만히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구조물 위치선정 등 지역주민과 협의가 안된 사항을 적극 해결해야 할 것임.
- 특히, 기반정비사업 추진시 농업진흥지역 지정 여부에 대해 농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으니 이에대한 구체적인 방침을 반회보 등을 통해 널리 홍보해야 할 것임.

< 진 부 면 >

1. 오대개발 토석채취 허가

○ '89. 12. 26 토석채취허가후 그동안 3차에 걸쳐 기간연장 허가를 받아 토석채취를 하고 있으나 원상복구가 필요한 산림훼손 부분의 중간복구 조치없이 계속 기간연장 허가를 함으로써 사업장 사후관리에 문제발생이 예상되므로 현지 조사후 사업장내 야적물의 다른장소 이송과 적절한 복구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 최초허가 : '89. 12. 26 (면적 13,350m²)
- 1차 연장 : '91. 1. 31 (면적 18,780m²)
- 2차 연장 : '93. 12. 11 (면적 54,357m²)
- 3차 연장 : '95. 2. 13 (면적 54,357m²)

2. 호명지구 수해복구 사업

○ 3개사업장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 및 부실사례가 발견되어 이에 대한 보완대책이 필요함.

- 하상 미정리, 용벽기초 부실 (병두골 소하천정비)
- 돌망태 상단부 (침단) 마무리 부실(김치영집앞 소하천정비)
- 날개벽 끝부분 측구 미정리, 교량난간대가 없어 추락사고 위험 (김억기집앞 소교량가설)

3. 간평리 평창연립 신축

○ 하천변으로 방류되고 있는 생활하수의 오수정화시설 유입 대책과 건물 뒷편의 산림훼손 부분의 법면붕괴 방지대책 및 적정절차에 의한 훼손여부와 준공전 건물 사용(관리인입주)에 대한 현지 조사 및 조치가 필요 함.

4. 간평리 간평연립 신축

- 정화조의 방류관로가 인접 농수로와 직접 연결(2개소) 되어 있어 상수원 오염이 우려되니 관로의 폐쇄조치 및 정화조를 직접 수거처리토록 지속적인 지도감독이 요구되고 있음.

5. 진부상수도 시설 확장사업

- 취수장 위치를 도로변 암반지역으로 선정하여 사업비 과다소요 및 공사지연을 초래하고 있어 향후 사업계획 수립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국도 6호선의 관로 매설구간에 대한 노면복구가 안되어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으니 동절기 이전에 복구를 해야 할것임.
- 지역업체의 미불공사대금(중장비등)의 지급 대책과 공사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징수 대책의 조기 마무리가 필요함.

< 도 암 면 >

1. 동계아시아경기대회 대비사업 추진

- '99. 1. 30 ~ 2. 6(8일)간 우리군에서 개최되는 동계아시아경기대회는 16여개국 6만여명이 참가하는 국제대회로서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대회관련시설 확충, 고원 눈마을조성사업등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군차원의 지원대책 및 지속적인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2. 도암면청사 신축

- 부실시공 보완, 설계변경 등에 의한 공기연장(128일) 사유 발생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니 결빙기간이 긴 지역임을 감안, 향후 철저한 공정관리가 요구되고 있음.

3. 화훼생산 유통지원사업

- 막대한 국비·지방비(1,931백만원)가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유리온실에서 발생한 하자보수가 시공업체 도산으로 지연되고 있으니 이의 조기 마무리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참여농가 대부분이 부채가 많아 종근대, 운영비등의 부담능력이 어려운 실정이나 정상적인 시설운영을 위한 농업경영자금 등의 지원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4. 황계시가지 하수도 정비사업

- '96. 6. 24부터 장기간 공사가 중단되고 있으니 공사재개를 위한 관로매설구간내 사유토지 (상지학원, 천주교)의 조속한 기공승락 협의 또는 관로매설구간 변경등의 대책이 필요함.

5. 하일랜드 지하층 보수공사

- 지하층에서 발생한 하자보수는 전문기관의 안전진단과 자문을 받아 동절기 이전에 마무리 되도록 조치해야 할 것임.

다. 처 리 계 획

○ 확인결과 개선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 집행기관에 통보 시책에 반영 되도록 하고
- 제도개선 및 시정요구 사항은 의정활동을 통하여 조기에 해결 될 수 있도록 추진

96년도하반기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처리계획

- 총 대상 사업장 : 71건
- 현지 확인 사업장 : 42건
- 개선·보완사업장 : 40건

평 창 군

목 차

[평 창 읍] _____ 3건

- 평창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관광문화과)
- 돌배나무양묘사업 (산림과)
- 하리 ~ 중부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건설과)

[미 탄 면] _____ 4건

- 산나물·찰옥수수가공 및 저온저장시설공사 (도시과)
- 창리지구 오수처리장 설치 (환경보호과)
-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 (환경보호과)
- 영월댐 수몰지구 대책 (관광문화과)

[방 립 면] _____ 5건

- 방림4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방림면)
- 수동지구 경지정리 사업 (건설과)
- 방림 - 계촌 - 둔내간 군도확·포장 사업 (건설과)
- 계촌교 가설공사 (건설과)
- 산나물·찰옥수수 가공 및 저온저장시설공사 (도시과)

[대 화 면]

8건

- 대화체육관 건립 (관광문화과)
- 대화쓰레기 매립장 조성 (환경보호과)
- 대화산업 토석채취허가 (산림과)
- 신2 ~ 4리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건설과)
- 대화7리 노후교량 재가설 사업 (건설과)
- 하안미 기계화 경작로 사업 (건설과)
- 상안미1리 도수로 개수공사 (건설과)
-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건설과)

[봉 평 면]

3건

- 봉평도읍정비사업 (도시과)
- 남안교 가설공사 (도시과)
- 봉평상수도시설 확장사업 (도시과)

[용 평 면]

7건

- 재산리 소형보 보수공사 (용평면)
- 양수시설 설치사업 (용평면)
- 한국청소년 수련마을 조성공사 (복지과)
- 용평 금당마을 조성사업 (환경보호과)
- 용전교 가설공사 (건설과)
- 장평도수로 개수공사 (건설과)
- 용전지구 발기반정비 사업 (건설과)

[진 부 면]

5건

- 오대개발 토석채취허가 (산림과)
- 호명지구 수해복구사업 (건설과)
- 간평리 평창연립 신축(환경보호과, 산림과)
- 간평리 간평연립신축 (환경보호과)
- 진부상수도 시설 확장사업 (도시과)

[도 암 면]

5건

- 동계아시아 경기대회 대비사업 추진 (관광문화과)
- 도암면 청사 신축 (재무과)
- 화훼생산 유통지원사업 (농정과)
- 횡계시가지 하수도 정비사업 (도시과)
- 하일랜드 지하층 보수공사 (도시과)

'96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 처리계획

[평 장 읍]

사 업 명	확 인 요 지	처 리 의 견 및 계 획
<p>○ 평창종합문화 예술회관 건립</p>	<p>○ 교량가설, 설계변경, 물가상승 등등에 의한 사업비 증가가 예상되므로 국·도비 확보를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특별히 요구되고 있으니 가시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임,</p> <p>○ 진입교량, 피로연장 등 설계변경의 조기 확정후 사업비 증가(6,655 ⇒ 8,000백만원추정)에 따른 계속비 변경승인이 선행되어야 함.</p>	<p>○ 예상사업비는 8,000백만원으로 국도비 확보를 위해 국비 2,000백만원, 도비 1,000백만원을 지원신청하였으며, 신청액 전액 확보를 위해 요로에 지원을 요청하고 있음. 또한 공사비 절감을 위해 공사비전액을 조기확보하여, 조기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겠음</p> <p>○ 설계변경은 11월중 용역, 12월중 확정할 계획으로 추진중이며, 계속비 변경은 차기 군의회에서 승인받을 계획임.</p>
<p>○ 돌배나무 양묘 사업</p>	<p>○ 96년도와 같이 발아불량으로 인한 사업실패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97년도 사업계획은 사전 신중한 검토후 추진해야 할 것임.</p> <p>< 사업개요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평창읍 후평리 답503번지의 1필지 - 면적 : 1,438m²(370평) - 투자액 : 1,058천원 ※ 파종, 조상, 정지, 시비인건비 - 파종량 : 20ℓ - 생산계획본수 : 100,000본 ※ 발아불량으로 실패 	<p>○ 그간의 추진실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배나무양묘기술부족으로 - 97년사업은 유묘를 구입 이식하거나 산지에 식재하는 것으로 추진 - '96. 10. 15활엽수 유묘이식 및 식재계획을 군수님에게 보고 <p>< 보고내용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배나무60cm이상으로 20,000본은 구입포지 이식 또는 산지에 식재 - 97년식재계획 : 면적 6ha, 본수 9,000본 - 돌배나무유묘구입결의 : '96. 11. 5 - 계약채결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일자 : '96. 11. 9 . 규 격 : 60cm이상

사업명	확인요지	처리 의견 및 계획
<p>○ 하리 ~ 중부간 농어촌도로 확 · 포장사업</p>	<p>○ 지연되고있는 보상 조기마무리 후 '97년도에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의 적기 추진에 만 전을 기해야 할 것임.</p>	<p>· 단 가 : 430원 · 본 수 : 20,000본 · 금 액 : 9,000,000원</p> <p>○ 의 견</p> <p>- 이상의 내용과 같이 양묘의 어려움 으로 유묘를 구입 이식 또는 산지에 식재</p> <p> [이식 : 11,000본 식재 : 산림식재 6ha(9,000본)</p> <p>○ 미보상된 1필지의 보상협의는 96년도 내에 마치고 도로확장을 완료한 후 '97년도 명시이월하여 '97년 6월이전 준공할 계획으로 영농에는 지장이 없 도록 사전조치후 공사 추진코자함.</p>

[미 탄 면]

사 업 명	확 인 요 지	처 리 의 건 및 계 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나물, 찰옥수수 가공및저온 저장시설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입로 및 부지협소에 따른 작업차량출입장애, 상수도 급수 대책공란, 특히 작업차량의 주정차공간 확보를 위한 하천복개, 성토작업에 예산 추가부담이 수반되는 등 당초 시설위치 선정에 신중을 기하지 못한점이 나타나고 있어, 향후 정상적인 시설운영을 위한 보완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복개, 성토작업은 사업비 잔액으로 변경설계후 사업마무리 ○ 상수도급수대책은 기존 간이상수도 사용 ○ 준공예정일 : '96. 12.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리지구오수처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하수관로 노후, 오수차집관로 미설치로 상당량의 오수가 하천으로 직접 유입되고 있으므로 오수차집관로 증설이 필요하며 우수 또는 기름등의 오수처리장 유입차단등 정상가동을 위한 철저한 관리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미탄면 창리의 하수도 시설이 노후 및 미개설로 인하여 일부지역의 오수가 차집되지 않고 있으나 도시과와 협의하여 하수도 개·보수사업과 차집관로 사업을 연계하여 시행코자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쓰레기소각시설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오수처리장 설치 사업을 추진 할때는 효율적인 오수차집이 될수 있도록 하수관로 보완사업이 연계 시행되도록 조치해야 할 것임. ○ 국도에서 분기되는 현재의 비포장 진입로가 노면불량 및 거리가 멀어 청소차량 통행이 불편하므로 구간단축을 위해서 비행기재 터널 부근 국도에서 진입하는 방안의 검토가 요구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도에서 쓰레기 매립장으로 직접 진입은 국도와 매립장간의 경사가 심하고 석회암지대로 진입로 개설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기존 도로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정비코자 함.

사 업 명	확 인 요 지	처 리 의 건 및 계 획
<p>○영월댐 수몰지구 대책</p>	<p>○영월댐 건설에 따른 수몰에 대비하여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수몰지구내 각종 부존자원의 군세입원화 개발 추진이 필요하며, 또한 천연기념물인 백룡동굴의 보존 또는 개발 방안에 대한 군차원의 적극적인 조치가 요구되고 있음.</p>	<p>○동굴의 보존 또는 개발방안은 전문가에 의한 정밀 조사 검토 후 결정할 사안으로 생각되며, 향후 개발 타당성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될 경우 개발방안은 수상유원지나 수변유원지 등 관광개발 또는 지역개발 차원에서 연계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정밀검토하여 처리할 계획임.</p>

[방 립 면]

사 업 명	확 인 요 지	처 리 의 건 및 계 획
○ 방림 4리 마을 안길 포장공사	○ 공사가 다소 지연되고 있으니 골재확보, 설계변경 등을 조기에 마무리 하여 공기내 완공이 되도록 공정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 골재 미확보로 공사가 지연되었으나 '96. 11. 8일자로 골재채취 허가를 득하여 '96. 12. 14까지 완공 토록 하겠음.
○ 수동지구경지정리 사업	○ 당초 토취장 선정 잘못으로 돌, 마사가 많은 질이나쁜 흙이 반입되었으며, 일부경지에는 10Cm정도 밖에 객토가 되지 않아 주민불만이 많아 97년중에 객토의 추가대책이 필요하며, 미불된 시공업체 노임, 식대등의 정산조치가 요구되고 있음.	○ 주민들이 선정해준 토취장에서 객토를 실시중(20Cm)객토에 작은자갈(석회암)이 섞여 채바가지 및 인력으로 투입선별작업을 실시해 주었으며, 당초지반에 돌이 많은 단지는 20Cm의 객토를 실시해도 부분적으로 10Cm 아래에는 돌, 자갈이 있는곳이 있음. 시공회사와 현지조사후 부분적으로 추가객토를 실시코자 하나 근본대책으로는 용자지원이나 자력으로 년차별 자체 객토를 시행토록 하는것이 바람직함. 시공당시 체불된 노임, 식대등은 시공회사에 확인결과 기정산 조치되었음.
○ 방림-계촌-둔내간 군도확포장 사업	○ 미포장구간 L=300m의 조기시공 대책이 요구되고 있어, 향후 군도사업은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 노선으로 선정해야 할 것임.	○ 잔여구간에 대하여는 성우건설(성우리조트내)에 국토이용계획 협의조건으로 시공지시하여 '97이전 완료토록 중용할 계획이며, 군도확포장 사업은 정비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사업 추진하고 있음.

[대 화 면]

사 업 명	확 인 요 지	처 리 의 건 및 계 획
<p>○ 대화체육관건립</p>	<p>○ 내년도 확보계획인 도비는 전액 확보 될수 있도록 차질없이 조치하고 현재시설중인 주차장 규모(48대)로는 향후 체육관 활용시 주차난이 예상되니 효율적인 시설운동을 위해서 주차공간의 추가확보 대책이 요구되고 있음.</p>	<p>○ 현 설계상 주차대수는 48대 (버스6, 승용차 42대) 로</p> <p>○ 본 공사완공후 인근 교육청 부지 약 157평에 대하여 교육청과 사용 협의 후 주차장을 증설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할 계획임.</p>
<p>○ 대화쓰레기매립장 조성</p>	<p>○ 쓰레기처리시설 설치승인의 조기 마무리등 사업의 적기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특히 진입로의 경우 현재 계획중인 직선노선은 구매가 심하여 결빙시 청소차 운행이 불가능 하므로 부지를 추가 매입하여 개설노선을 변경해야 할 것임.</p>	<p>○ '96. 12월 환경성검토 용역발주하고, '97년 초에 설치승인 요청하여 '97년 말까지 설치완료 예정이며, 진입로 노선구배는 '96. 9월 1차로 지역개발과와 협의 점검하였으며, 본 환경성검토 용역발주시 진입로 부분을 재검토하여 완벽한 사업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음.</p>
<p>○ 대화산업토석채취허가</p>	<p>○ 영동고속도로가시권에 위치한 사업장으로서 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사업장 하단부의 중간복구와 비산먼지 방지대책등 지속적인 관리대책이 요구됨.</p> <p>○ 관계부서의 관리감독 소홀로 골재무단반출 사례가 발생하여 '96.6.21골재반출량 22,021m³에 대한 폐석을 2,352,000원을 추진하였으나, 상당량의 무단반출장의 조사에서 누락 되었으나, 정밀제조사후 폐석료의 추정조치가 필요함.</p>	<p>○ 사업장(신리 산214번지) 하단부의 중간복구문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6.11.11일자 이명우에게 중간복구 명령 - 중간복구설계서 제출되면 심사후 승인예정 - 승인이 되면 설계서대로 복구토록 지도감독 철저 이행코저 함. - 용벽설치 및 수로개설등 공중 <p>○ 비산먼지 방지대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보호과에 통보 비산먼지, 분진 등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방지 대책수립 이행조치

사 업 명	확 인 요 지	처 리 의 건 및 계 획
<p>○ 신2~4리 농어촌 도로확포장사업</p> <p>○ 대화7리 노후교량 제가설사업</p>	<p>< 허가사항 ></p> <p>○ 위치 : 대화면 신리 산214번지</p> <p>○ 면적 : 38,043m'</p> <p>○ 용도 : 광산개발(규석)</p> <p>○ 기간 : '96.3.5 ~ '98.12.31</p> <p>○ 수허가자 : 이명우</p> <p>○ 복구비 : 232,183,940원</p> <p>< 폐석채취 허가사항 ></p> <p>○ 일자 : '96. 6. 8(제7호)</p> <p>○ 면적 : 38,043m'</p> <p>○ 용도 : 경암 및 규석 부산물</p> <p>○ 수량 : 291,655m'</p> <p>○ 보조기층의 골재는 설계내역에 의한 규격품을 사용하여 완벽하게 시공되도록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것임.</p> <p>○ 교량입구 마을회관이 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으니 철거대책을 강구하고 공기내 완공 될 수 있도록 공사추진을 서둘러야 할 것임.</p>	<p>○ 채석허가 없이 쇄골재 불법판매 행위에 대하여</p> <p>- 쇄골재 생산판매 : 총 30,366m'</p> <p>['95 : 21,859m'(2,304,500원) '96 : 8,507m'(896,800원)</p> <p>- 사건처리</p> <p>· '96.5.25일 추적조사로 사건인지 한바 8,507m'의 폐석이 레미콘 회사에 납품된것을 납품서에 의거 산출한량임.</p> <p>· 이 조사과정에서 '95년도에 이미 21,859m'을 판매 처분한바 있고, 이의 대금 2,352,000원을 추정 하였음.</p> <p>○ 상당량의 폐석이 무단 반출량의 조사에서 누락되었다는데 대하여</p> <p>- '96.5.25일 현장조사시 철저히 조사하여 30,366m'의 폐석대금3,201,300원을 징수하였기 때문에 그 이상의 무단 반출량을 적발치 못하였음.</p> <p>○ 선택층 보조기층에 사용되는 골재는 도로표준시방서 및 설계서에 명시한대로 50m/m이하의 골재를 포설토록 공사감독에 철저히 기할것임.</p> <p>○ 접속도로 편입지장물로 반영하여 감정평가 완료된 상태로 12월이전 보상금을 지급하여 철거할 계획이며, 년내 완공할 계획임.</p>

사 업 명	확 인 요 지	처 리 의 견 및 계 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안미 기계화 경 작 로 확 · 포장사업 ○ 상안미 1리 도수로 개수공사 ○ 하안미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시공중인 노폭(3m)이 좁아 소형차량도 교행이 불가능하여 4m로 확장해야하며, 총수로구간(812m)중 200m구간만 시공중에 있으나 잔여구간(612m)미시공시 용수공급에 차질이 예상되니 시공대책을 강구해야 할것임. ○ '96.5.6공사중지 이후 장기간 공사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니, 동절기이전 완공 될수 있도록 공사추진을 서둘러야 할 것임. ○ 취수원 위치를 조기확정하여 공기내에 완공되도록 하고, 특히 관로매설시 설계상 위치대로 정확히 매설되도록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해야할것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낙찰차액으로 하안미 초등학교 앞 812m는 3m계획을 4m로 확장하는것으로 설계변경시행중에 있으나 당장의 사업비 부족으로 전구간 수로관 설치는 어려운바 토공수로를 정비하여 용수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할 것임 ○ 배수확이 늦어져 장비진입이 불가하였으며 10. 25일 재착공하여 현재 버림콘크리트타설등 공사진행중인바, 동절기 이전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할 것임. ○ 취수원 위치를 확정하여 현재 취입보설치를 완료하였으며, (현공정50%) 관로매설 공사의 위치는 주민과 협의 최소비용으로 이용에 편리하도록 선정 터파기는 설계와 동일하게 시공토록 감독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

[봉 평 면]

사 업 명	확 인 요 지	처 리 의 견 및 계 획
<p>○봉평도읍정비 사업</p>	<p>○구거, 균유지 불하지연 등으로 지연되고 있는 지장물 (9동) 철거를 위하여 군에서 좀더 적극적인 의지와 조치가 필요하며, 특히 철거대상 가구가 대부분 영세민임을 감안하여 실질적인 이주대책 등 적절한 대안을 강구 제시하여 사업이 연내에 마무리 되도록 조치해야 할 것임.</p>	<p>○도로용도 폐지후 매각 지연으로 철거하지 못하는 6가구에 대하여는 선사용승락 조건으로 가옥 철거완료</p> <p>○철거가구 사정으로 철거가 지연되고 있는 3가구도 '96. 11. 30한 철거</p> <p>○지장물 보상금, 이사비등 법적보상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보상</p> <p>○준공예정일 : '96. 12. 31</p>
<p>○남안교가설공사</p>	<p>○기존교량의 일부구간이 붕괴되어 차량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니 교량 완공전까지 차량등의 통행대책이 요구되고 있으며 잔여예산을 차질없이 확보하여 '97년 우기전에 완공 되도록 조치해야 할 것임.</p>	<p>○'97당초예산 편성반영 : 966백만원</p> <p>○우기전 완공하지 못할시 시공자와 협의, 대책을 수립하여 차량등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p>
<p>○봉평상수도시설 확장사업</p>	<p>○정수장 부지 토지사용승락 협의와 취수원 위치 확정을 조기에 마무리 하여 공정별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야 할 것임.</p>	<p>○정수장 편입토지 4필지중 3필지는 기공승락협의를 완료하였으며, 미이행된 1필지 (유승환)는 묘지 조성예정토지 제외요구 의견수렴등으로 지연되고 있으나, 11월경 협의완료 예정이며,</p> <p>○취수원은 정수장 및 관로공사를 우선 추진하고 홍정담 이전까지는 현취수원을 이용하여 취수할 수 있도록 관련 주민들과 협의중에 있음</p>

[용 평 면]

사 업 명	확 인 요 지	치 리 의 건 및 계 획
<p>○ 재산리 소형보수공사</p>	<p>○ 표면보수를 하지 않은 나머지 구간의 보를 그대로 둘 경우 수해등에 의한 파손 위험이 있으니 준공전에 보표면의 마무리보수가 필요함</p>	<p>○ '97년도 예산확보 하여 미보수부분 40m보수예정임.</p>
<p>○ 양수시설설치사업</p>	<p>○ 사업비 27,234천원의 도수로 개수공사는 군에서 시행하는 반면 건축, 기계, 전기등의 복합설계가 필요한 총 사업비 60,000천원 규모의 양수시설 사업을 기술인력이 없는 면단위에서 시행토록하여 현지확인 일('96.10.28) 현재까지도 설계도 마무리하지 못하는등 사업지연을 초래한것은 반드시 시정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며, 특히 본 사업의 경우 사업비 추가소요시 예산확보 선행후 공사를 착공해야 할 것임.</p>	<p>○ '97년도 당초예산에 추가사업비 계상 하였으며, 확정후 공사발주 계획임.</p>
<p>○ 한국청소년수련마을 조성공사</p>	<p>○ 청소년 수련마을 완공후 향후 시설 운영시 부녀단체, 농민단체등이 직접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하는등 지역주민의 소득과 연계됨은 물론 지역발전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수 있도록 공무원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p>	<p>○ 한국 청소년 수련마을은 '97. 6월말 완공예정으로 문화체육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완공후 시설은 문화체육부에서 직영토록 계획되어 있으며, 향후 운영시 현지 주민채용 및 현지 농산물 구매등을 문화체육부에 적극 건의토록 하겠음.</p>
<p>○ 용평금당마을 조성사업</p>	<p>○ 평창강 상류지역임을 감안하여 총 48동의 전원주택에서 배출되는 오수가 완전히 정화될수 있는 규모의 오수정화시설이 설치되어야 하고, 또한 분양완료 후에도 계속 정상가동이 될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음.</p>	<p>○ 각 세대별로 발생하는 분뇨에 대하여는 1차분뇨정화조를 설치하여 고형물 및 협잡물을 제거토록하고 2차 오수정화시설로 유입하여 인근 하류수계의 오염부하량을 최대한 감소할 계획이며, 세대별로 발생하는 오수는 오수정화시설로 차집하여 처리할 계획임.</p> <p>○ 분양후의 관리는 시공자인 청림종합건설(주)에서 관리 할 계획임.</p>

사 업 명	확 인 요 지	처 리 의 건 및 계 획
○ 용전교가설공사	○ 도로공사와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영동고속도로 4차선공사와 연계한 시공이 되도록 하고 연내 준공이 되도록 철저한 공정관리가 요구되고 있음	○ 도로공사와 사전협의를 지난 8월이전 완료하여 교량과 고속도로 박스와의 선형과 계획고가 일치되도록 하였으며, 현재 스투브 콘크리트 타설 완료 후 양생중에 있으므로 연내 마무리 가능함.
○ 장평도수로개수공사	○ '96. 5. 6공사중지 하였다가 도수로의 물이 끊기는 9월경에 공사중지 해제를 할수 있음에도 '96. 10. 25일 공사재개를 하여 사업적기를 놓친면이 있으니 내년도에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연내 완공조치	○ 장비투입이 용이하도록 하천물이 최대한 줄어들때를 기다렸다가 10. 25 재작공하였으며 현재 80%공정에 있어 동절기전 준공 및 '97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할것임.
○ 용전지구발기반정비사업	○ 주민과 마찰없이 원만히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구조물 위치선정등 지역주민과 협의가 안된 사항을 적극 해결해야 할 것임. 특히 기반정비사업 추진시 농업진흥지역 지정여부에 대해 농민들이 궁금해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침을 반회보등을 통해 널리 홍보해야 할것임.	○ 실시설계당시 주민과 협의를 통하여 교량등 구조물 위치를 선정하였으며, 사업시행중에도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수렴하여 반영 조치코자함. 기반정비사업 추진후 농업진흥지역 지정여부는 진흥지역 편입요건 및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 사안임으로 우리 군 자체적으로 방침을 홍보 하는것은 어려운 실정임.

[진 부 면]

사 업 명	확 인 요 지	처 리 의 건 및 계 획
<p>○ 오대개발토석 채취허가</p>	<p>○ '89. 12. 26토석채취 허가후 그동안 3차에 걸쳐 기간연장 허가를 받아 토석채취를 하고 있으나</p> <p>○ 원상복구가 필요한 산림훼손 부분의 중간복구 조치없이 계속 기간연장허가를 함으로서 사업장 관리에 문제발생이 예상됨으로 현지조사후 사업장내 야적물의 다른 장소 이송과 적절한 복구대책이 요구되고 있음.</p> <p>- 최초허가 : '89. 12. 26 (13,350m²)</p> <p>- 1차 연장 : '91. 1. 31 (18,780m²)</p> <p>- 2차 연장 : '93. 12. 11 (54,357m²)</p> <p>- 3차 연장 : '95. 2. 13 (54,357m²)</p>	<p>○ 중간복구조치없이 계속기간연장허가 함으로서 사업장관리 문제발생예상에 대하여</p> <p>- 중간복구할 위치는 사업장입구로서 이곳에는 석분이 약 30,000m²정도 적치되어 있으며,</p> <p>- 확장이되면서 이곳에 이미 중간복구 되었어야 하겠지만 이행치 못 하였음.</p> <p>○ 사업장내 야적물의 다른장소 이송과 적절한 복구대책에 대하여</p> <p>- 석분 30,000m²를 다른 장소로 옮기려면 10톤차로 3천대분으로 경비 110,000천원 소요되고 옮길 장소도 농지를 일시전용 받아야 하는 인력과 사업비가 많이들어 재정능력이 빈약하여 야적물 이송은 불가능 실정임.</p> <p>- 대책 : 중간복구할 장소가 50~60° 정도의 급경사지이고 암석으로 되어 있어, 경사각을 35° 정도의 안정각을 유지하도록 "산정상" 부분을 낮추도록한 연후</p> <p>. 등나무, 덩굴류를 식재하고,</p> <p>. 망울덮어 복구하는 공법으로 설계 시행토록 하겠음.</p>

사 업 명	확 인 요 지	치 리 의 건 및 계 획
<p>○호명지구 수해 복구 사업</p>	<p>○3개사업장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 및 부실사례가 발견되어 이에 대한 보완대책이 필요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상 미정리, 웅벽기초 부실 (병두골 소하천정비) - 돌망태 상단부 (철단) 마무리 부실(김치영집앞 소하천정비) - 날개벽 끝부분 측구 미정리, 교량난간대가 없어 추락사고 위험(김억기집앞 소교량가설) 	<p>○보완시공요구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시공회사로 하여금 '96. 11. 30일한 보완시공토록 조치하겠음.</p>
<p>○간평리 평창 연립신축</p>	<p>○하천변으로 방류되고 있는 생활하수의 오수정화시설 유입 대책</p> <p>○건물 뒷편의 산림훼손 부분의 법면 붕괴 방지대책 및 적정절차에 의한 훼손여부와 준공전 건물 사용(관리인 입주)에 대한 현지조사 및 조치가 필요함</p> <p>< 위법사항 ></p> <p>○행위자 인적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명 : 정삼로(43세) - 국도 : 평창군 진부면 간평리 220 - 1 <p>○범죄사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기간 : '94. 7. 26 ~ 현재 - 위 치 : 진부면 간평리 산184 - 불법훼손면적 : 393m² - 본 수 : 잣나무 150본 - 피 해 액 : 289,800원 	<p>○오수정화시설 설치전에 오수가 발생 할때는 건축물 사용금지등의 조치를 하여 하천오염을 사전에 예방해 나갈 계획임.</p> <p>< 현장조사 ></p> <p>○'96. 10. 25일 평창군 의회에서 현장조사시 산림과장 입회확인 조사 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인요지 제2항과 같이 위법사항이 적발되어 - '96. 10. 31 7급 김정석이 현장에 대한 상황을 조사한후 범죄인지 보고서를 제출하여, - 피의자 정삼로를 산림법위반(제118조1항)으로 입건수사중에 있으며, - 수사가 종결되는 대로 영월지청장에게 사건송치 요저함. <p>○송치후 처분결과에 대하여는 검찰처분 통보서가 접수되는 대로 의회에 결과 보고요저함.</p>

사 업 명	확 인 요 지	처 리 의 건 및 계 획
<p>○간평리간평연립 신축</p> <p>○진부상수도시설 확장사업</p>	<p>○정화조의 방류관로가 인접농수로와 직접 연결(2개소)되어 있어 상수원 오염이 우려되니 관로의 폐쇄조치 및 정화조를 직접 수거처리토록 지속적인 지도감독이 요구되고 있음.</p> <p>○취수장 위치를 도로변 암반지역으로 선정하여 사업비 과다 소요 및 공사지연을 초래하고 있어 향후 사업계획 수립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p> <p>○국도6호선의 관로 매설구간에 대한 노면복구가 안되어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으니 동절기 이전에 복구를 해야 할것임</p> <p>○지역업체의 미불공사대금(중장비등)의 지급대책과 공사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징수대책의 조기 마무리가 필요함.</p>	<p>○정화조에서 도수로로 연결된 방류관에 대하여는 즉시 폐쇄토록 할 계획임.</p> <p>○진부상수도 취수장은 1일 10,500 T/D 취수가 가능한 장소를 선정하고자 오대천 및 척천리 합류점으로 결정하였으며, 공사지연은 당초 도급회사 부도에 기인한 것임.</p> <p>○국도관로 매설구간 복구는 도급회사 부도로 지연되었으나, '96.11.8~9일 간 기층 및 표층 일부를 복구하여 위험요소를 제거하였음.</p> <p>○시공업체 부도로 공사에 투입된 장비대동 미불금이 발생하였으며, 동대금은 관련회사로 하여금 압류조치토록 지도하였으며, 지체상금은 공사대금지출시 상계할 것임.</p>

[도 압 면]

사 업 명	확 인 요 지	처 리 의 건 및 계 획
<p>○ 동계아시아경기 대회 대비사업 추진</p>	<p>○ '99. 1. 30 ~ 2. 6(8일)간 우리군에서 개최되는 동계아시아 경기대회는 16여개국 6만여명이 참가하는 국제대회로서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대회관련시설 확충, 고원 눈마울조성사업등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군차원의 지원대책 및 지속적인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해야 할것임.</p>	<p>○ 동계아시아경기대회에 대비하여 경기장은 용평리조트부담으로 개발하는 계획으로 용평리조트가 실시설계중이며,</p> <p>○ 개최지정비사업은 금년 5월 강원도와 협의하여 도암상수도사업등 총 28개사업에 국·도·군비등 885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각 분야별로 추진중입니다.</p> <p>○ 사업비 확보는 97년 당초예산에 국·도비 지원이 확정되어야만 군비 부담등이 확정되어 97년부터 추진하게 될 전망임.</p>
<p>○ 도암청사신축</p>	<p>○ 부실시공 보완, 설계변경등에 의한 공기연장(128일) 사유발생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니 결빙기간이 긴 지역임을 감안, 향후 철저한 공정관리가 요구되었음.</p>	<p>○ 부실시공 보완을 위하여 주요공정별 검측 실시</p> <p>○ 설계변경사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소방차고 → 다용도 창고 및 예식피로연장 - 1층민원실 A,B구분 → 민원실통합 및 현관앞으로 이동 - 2층대회의실 54평→76평으로 확장 - 기존건물 철거비미계상 → 계상 <p>· 도암면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기온이 10℃이하로 강하되기전 공사를 중지하고 97년도 4월 공사중지해지 할계획임.</p>

사 업 명	확 인 요 지	처 리 의 견 및 계 획
<p>○ 화훼생산 유통 지원사업</p>	<p>○ 막대산 국비·지방지(1,931백만원)가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유리온실에서 발생한 하자보수가 시공업체 도산으로 지연되고 있으니 이의 조기 마무리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며,</p> <p>○ 참여농가 대부분이 부채가 많아 중근대, 운영비등의 부담능력이 어려운 실정이니 정상적인 시설운영을 위한 농업경영자금 등의 지원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p>	<p>○ '95년도 완공한 오대산화훼단지 유리온실 하자보수는 '96. 11. 3일 춘천시 석교동 정산농원과 계약체결되어 11. 30일부터 보수할 계획임.</p> <p>○ 각종 시설운영자금은 농산물 유통공사와 협의하여 수출자금 20백만원, 출하선도자금 35백만원으로 총 55백만원을 연리 5%로 긴급융자조치 하였으며, 또한 12월경 유통자금 90백만원(융자)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임.</p>
<p>○ 황제시가지하수도정비사업</p>	<p>○ '96. 6. 24부터 장기간 공사가 중단되고 있으니 공사재개를 위한 관로매설 구간내 사유토지(상지학원, 천주교)의 조속한 기공승락 협의 또는 관로매설구간 변동등의 대책이 필요함.</p>	<p>○ 국도점용부분(암거20m)과 상지학원으로 부터 기승락된 부분(142m)은 계획대로 시공하고</p> <p>○ 미개설 도로구간(95m)은 소유자인 천주교 춘천교구청에 지속적 기공승락 협의요청, 협의 불성립시 본 구간은 시공 보류하고 도로개설구간을 연장 시공하며, 향후, 법인 변경 요구선인 도시계획도로상에 관로 매설 추진</p>
<p>○ 하일랜드 지하층 보수공사</p>	<p>○ 지하층에서 발생한 하자보수는 전문기관의 안전진단과 자문을 받아 동절기 이전에 마무리 되도록 조치해야 할 것임.</p>	<p>○ '96. 2. 17민방위 재난위험 D급으로 지정</p> <p>○ '96. 5. 7직접적 구조부실층인 지하층(부설주차장)에 대하여 사용중지 명령</p> <p>○ 사단법인 한국안전기술협회의 안전진단 결과에 의거 공사중 일부 입주자의 이의제기로 공사중지 상태이며,</p> <p>○ '96. 10. 18관리주체의 공기연장 계획에 따라 '97. 5. 30까지 보수계획임.</p>

- '96 년 도 하 반 기 -

군정주요사업장추진상황

평 창 군

— '96 下 半 期 —

郡政主要事業推進狀況

平 昌 邑

목 차

- 평창군종합문화예술회관건립 _____ 관광문화과
- 돌배나무 양묘사업 _____ 산 림 과
- 하리~종부간 농어촌도로확·포장 _____ 건 설 과
- 노론~하안미간 군도확·포장 _____ 건 설 과
- 평창상수도 취수원 이전 _____ 도 시 과
- '96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 추진사항
 - 평창군종합문화예술회관건립 _____ 관광문화과
 - 평창노성정건립사업 _____ 관광문화과
 - 평창쓰레기소각로설치사업 _____ 환경보호과
 - 달동네 정비사업 _____ 도 시 과
 - 평창우회도로개설사업 _____ 도 시 과
 - 소방도로 개설예정지 _____ 도 시 과

평창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개요

- 위 치 : 평창읍 종부리 산66-6번지
- 규 모 : 부지 8,650평 건물 1,208평
- 구 조 : 지하 1층 지상 2층 철근콘크리트
- 시설내역 : 대공연장(504석), 소공연장, 전시실,
향토자료실, 야외공연장등
- 총사업비 : 8,000백만원(당초 6,655백만원)
- 사업기간: '94 ~ '98

□ 추진상황

구분	본공사	감리(전면책임감리)
시행원인행위	'94. 9.30	'95. 5. 3
계약방법	조달발주	공개제한입찰(군발주)
입찰	'94. 11.30	'95. 6. 5
계약	'94.12.9	'95. 6. 9
(건축트목기계)	-계약금액4,527 백만원	-계약금액 :284백만원
	-업체 :(주)대양	-업체 :(주)한석 엔지니어링
착공	'94.12.13	'95. 6.9.
준공예정	'98.12.30	'98.12.30

□ 공사비확보

총소요액	확 보				미확보
	계	도비	군비	문화기금	
백만원 8,000 당초6,655백만 원계획	4,150 (52%)	2,300	1,400	450	백만원 3,850

□ 공정별 사업내역 및 추진실적 — 종합진도 37%

공사별	계약금액	시공사	추진실적
계	5,826백만원		
건축	2,822	(주)대양	.1층벽체철근및거푸집조립
토목	992	“	.야외공연장 구조물공사 .운동장순환 도로절토
기계	723	“	.지하층1층 기계배관완료
전기	232	(주)보승개발	.지하1층 배관
통신	26	(주)제일통신	.지하1층 배관
무대기계	449	조달구매	.건물완공후 설치 중앙종합무대설 비
관급자재		조달구매	.철근.레미콘.시멘트구입수배전반구 입
기타 (음향,조명,조 경등)	582 미발주		

□ 문제점

- 당초설계누락시설 추가계획 ————— 816백만원
 - 피로연장 : 54평 150백만원
 - 화장석깔기 : 103백만원
 - 화장석 붙임 (외장) : 233백만원
 - 교 량 : 330백만원

- 설계변경 ————— 641백만원
 - 당초풍화암 ⇒ 암판정 7,607m' 98 백만원
 - 오케스트라피트 신설 22평 200 백만원
 - 기타(가설사무소, 핸드레일 등) 344 백만원

- 물가상승율 적용————— 573백만원
 - '95년도5.79%적용192 백만원
 - '96년도9.19%적용381 백만원(일부 공사물량증가포함)

- 감리비증가 ——— 당초 252백만원 ⇒ 284백만원
 - '96년 감리비 평균 33%인상
 - ※ 공기연장 장기화에따라 감리기간 장기화 ⇒
감리비계속증가 전망

□ 대책

- 국도비 보조금 지원신청 — 2,700백만원

돌배나무 양묘사업

□ 사업개요

- 시행부서 : 산림과 자원조성계
- 위 치 : 평창읍 후평리 답503번지외1필
- 사업규모 : 1,438㎡
- 사업비 : 5,000천원
- 투자액 : 1,058천원
- 사업기간 : '96. 4. 20 - 4. 23
- 사업계획

포지민적	상 민적	파종량(종자)	생산계획	비 고
1,438㎡	798㎡	20g	100,000본	발아 불량 으로 실패

□ 돌배나무 발아 불량 사유(원인)

- 성숙한 종자체취를 하지 못하고 미숙한 종자 채취
- 발아촉진을 위한 노천매장시 관리부실 및 불량종자 혼합으로 발아 불량
- 종자 파종후 봄 가뭄으로 발아율이 저조한 것으로 사료됨

□ 향후 대책

- '96종자파종에 의한 사업 실패원인을 정확히 분석하여 중앙임업연구원 및 강원도 산림 환경 연구원등 전문기관의 자문과 기술 습득으로 완벽한 사업이 되도록 대책 강구

하리-종부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 사업 개요

- 시행부서 : 건설과
- 위 치 : 평창읍 종부리
- 사업규모 : 도로 확·포장 L=1,26km (B=7.5m)
- 사업비 : 755,511천원
 - 양여금 : 568,363 균 비 : 187,148
- 사업기간 : '96. 6. 4 ~ 97. 5. 23
- 현 공 정 : 30 %
- 추 진 상 황

시행(품의)일자	입찰 일자	계약 일자	계약 방법	계약금액(천원)
96. 4. 23	96. 5. 22	96. 5. 29	경쟁입찰	365,559

착 공 (예 정) 일 자	준 공 (예 정) 일 자	설 계 변 경 내 역			도급업체	감독공무원
		일 자	증감액	변경금액		
96. 6. 4	97. 5. 23	-	-	-	(주)하나건설	정 기 화

※ 설계변경 사유 :

□ 문제점 및 대책

- 년내 절대공기 부족으로 '97이월완공 전망

노론-하안미간 도로확포장사업

□ 사업 개요

- 시행부서 : 건설과
- 위 치 : 평창읍 고길리
- 사업규모 : 도로 확·포장 L=0.76km (B=8.0m)
- 사업비 : 489,897천원
 - 양여금 : 370,000 관비 : 119,897
- 사업기간 : '96. 6. 9 ~ 97. 3. 5
- 현 공 정 : 65 % (빈내 준공가능)
- 추진 상황

시행(품의)일자	입찰 일자	계약 일자	계약 방법	계약금액(천원)
96. 4. 23	96. 5. 22	96. 5. 31	경쟁입찰	306,577

착 공 (예 정) 일 자	준 공 (예 정) 일 자	설 계 변 경 내 역			도급업체	감독공무원
		일 자	증감액	변경금액		
96. 6. 9	97. 3. 5	-	-	-	성우종합건설 (주)	김 찬 수

※ 설계변경 사유 :

□ 문제점 및 대책

- 없 습 -

평창상수도 취수원이전사업

□ 사업 개요

- 시행부서 : 도시과
- 위 치 : 평창읍 여만리 (평창강)
- 사업규모 : 취수보 L = 32m, 도수관로 1,107m, 접합정 4기
- 사업비 : 420,000천원 (총사업비 : 420,000천원)
 - 국 비 : - 도 비 : - 군 비 : 420,000 자부담 :
- 사업기간 : '96. 8. 8 ~ '97. 2. 3
- 현 공 정 : 30 %
- 추진상황

시행(품의)일자	입찰일자	계약일자	계약방법	계약금액(천원)
'96. 7. 30		'96. 8. 2	수 의	312,290

착 공 (예정) 일 자	준 공 (예정) 일 자	설계변경내역(천원)			도급업체	감독공무원
		일 자	증감액	변경금액		
'96. 8.8	'97. 2.3	-	-	-	유성종합건설 (주) 최상길	토목 7급 고준태

□ 문제점 및 대책 : 없 음

— '96 下 半 期 —

郡政主要事業推進狀況

美 灘 面

목 차

<input type="checkbox"/> 한탄리 농로포장	_____	미 탄 면
<input type="checkbox"/> 창1리 마을안길 포장	_____	미 탄 면
<input type="checkbox"/> 군도 한탄~마하간 아스콘포장	_____	미 탄 면
<input type="checkbox"/> 백운리 소교량 가설	_____	미 탄 면
<input type="checkbox"/> 면청사 지붕 보수공사	_____	미 탄 면
<input type="checkbox"/> 복지회관 지붕 방수공사	_____	미 탄 면
<input type="checkbox"/> 피로연장 화장실 신축	_____	미 탄 면
<input type="checkbox"/> 미탄쓰레기 소각시설 설치	_____	환경보호과
<input type="checkbox"/> 미탄 창리 농촌오수처리장 설치	_____	환경보호과
<input type="checkbox"/> 산채나물 가공 공장 (평안2리)	_____	도 시 과
<input type="checkbox"/> '96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 추진사항		
○ 미탄 쓰레기 소각장 설치사업	_____	환경보호과
○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	_____	도 시 과

한탄리 농로포장공사

사업개요

- 시행부서 : 미탄면
- 위 치 : 한탄리 (고마루)
- 사업규모 : L=300M, B=3.5M
- 사업비 : 13,923천원
- 사업기간 : '96. 5. 1 ~ '96. 6. 28
- 현 공 정 : 100 %
- 추진상황

시행일자	입찰일자	계약일자	계약방법	계약금액 (천원)
'96.4.26		96. 4.26	수의계약	13,923

착 공 일 자	준 공 일 자	설계변경내역 (천원)			도급업체	감 독 공무원
		일 자	증감액	변경액		
'96. 5. 1	'96. 6. 28	-	-	-	태창건설 유인섭	최준원

※ 설계변경사유 :

문제점 및 대책

창1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사업개요

- 시행부서 : 미탄면
- 위 치 : 창1리 (돈넘이)
- 사업규모 : L=340M, B=3.5M
- 사 업 비 : 23,919천원
- 사업기간 : '96. 5. 21 ~ '96. 7. 19
- 현 공 정 : 100 %
- 추진상황

시행일자	입찰일자	계약일자	계약방법	계약금액 (천원)
'96.5.14		96. 5.16	수의계약	13,442

착 공 일 자	준 공 일 자	설계변경내역 (천원)			도급업체	감 독 공무원
		일 자	증감액	변경액		
'96. 5. 21	'96. 7. 19	-	-	-	용평기업 전 도 호	최준원

※ 설계변경사유 :

문제점 및 대책

한탄~마하간 아스콘포장공사

□ 사업개요

- 시행부서 : 미탄면
- 위 치 : 미탄면 한탄리.기화리.마하리
- 사업규모 : L=4KM. 교행장소 20개소
- 사업비 : 138,863천원
(군비: 84,000천원 .자부담 : 54,863천원)
- 사업기간 : '96. 7. 27 ~ '96. 8. 20
- 현 공 정 : 100 %
- 추진상황

시행일자	입찰일자	계약일자	계약방법	계약금액 (천원)
'96.7.25		96. 7.27	수의계약	47,288

착 공 일 자	준 공 일 자	설계변경내역 (천원)			도급업체	감 독 공무원
		일 자	증감액	변경액		
'96. 7. 27	'96. 8. 20				삼양건설 김 진 호	최준원

※ 설계변경사유 :

□ 문제점 및 대책

백운리 소교량가설공사

사업개요

- 시행부서 : 미탄면
- 위 치 : 백운리
- 사업규모 : 소교량 가설 L=15M, B=4M 접속도로 L=30M, B=4M
옹벽40M, H=15M
- 사업비 : 49,999천원
- 사업기간 : '96. 6. 15 ~ '96. 9. 18
- 현 공 정 : 100 %
- 추진상황

시행일자	입찰일자	계약일자	계약방법	계약금액 (천원)
'96.6.13		96. 6.15	수의계약	34,310

착 공 일 자	준 공 일 자	설계변경내역 (천원)			도급업체	감 독 공무원
		일 자	증감액	변경액		
'96. 6. 15	'96. 9. 18	'96. 8. 17	증 8.124	42,434	석청건설 민 두 식	최준원

※ 설계변경사유 : 접속도로 농경지 점용 방지

문제점 및 대책

면청사 지붕보수공사

사업개요

- 시행부서 : 미탄면
- 위 치 : 창3리 (면사무소)
- 사업규모 : 지붕보수 258.8m²
- 사 업 비 : 18,214천원
- 사업기간 : '96. 10. 1 ~ '96. 11. 30
- 현 공 정 : 90 %
- 추진상황

시행일자	입찰일자	계약일자	계약방법	계약금액 (천원)
'96.9.23		96. 9.30	수의계약	18,214

착 공 일 자	준 공 일 자	설계변경내역 (천원)			도급업체	감 독 공무원
		일 자	증감액	변경액		
'96. 10. 1	'96. 11. 30	-	-	-	대해건설 심 상 신	최준원

※ 설계변경사유 :

문제점 및 대책

복지회관 옥상방수공사

사업개요

- 시행부서 : 미탄면
- 위 치 : 창3리 (복지회관)
- 사업규모 : 옥상방수 238.84㎡
- 사업비 : 18,344천원
- 사업기간 : '96. 9. 18 ~ '96. 11. 16
- 현 공 정 : 40 %
- 추진상황

시행일자	입찰일자	계약일자	계약방법	계약금액 (천원)
'96.9. 3		96. 9.11	수의계약	18,344

착 공 일 자	준 공 일 자	설계변경내역 (천원)			도급업체	감 독 공무원
		일 자	증감액	변경액		
'96. 9. 18	'96. 11. 16	-	-	-	화신건설 최규택	최준원

※ 설계변경사유 :

문제점 및 대책

피로연장 화장실 신축공사

사업개요

- 시행부서 : 미탄면
- 위 치 : 창3리 (피로연장)
- 사업규모 : 화장실1동 (3칸)
- 사 업 비 : 5,000천원
- 사업기간 : '96. 10. 10 ~ '96. 11. 20 (40일)
- 현 공 정 : 90 %
- 추진상황

시행일자	입찰일자	계약일자	계약방법	계약금액 (천원)
'96.10.9		96.10.10	수의계약	5,000

착 공 일 자	준 공 일 자	설계변경내역 (천원)			도급업체	감 독 공무원
		일 자	증감액	변경액		
'96. 10. 10	'96. 11. 20	-	-	-	건설중기 정 옥 화	최준원

※ 설계변경사유 :

문제점 및 대책

미탄쓰레기 소각시설 설치

□ 사업 개요

- 시행부서 : 환경보호과
- 위 치 : 미탄면 백운리 산 1 - 1
- 사업규모 : 소각로 1기(95kg/hr), 부대시설 1동
- 사업비 : 50,000천원
 - 도비 : 30,000천원 군비 : 20,000천원
- 사업기간 : 1995. 10. 10 ~ 1996. 2. 7.
- 현공정 : 100%
- 추진상황

시행(품의)일자	입찰일자	계약일자	계약방법	계약금액(천원)
1995. 8.16.	1995. 8. 21 조달요청	1995.10.10	조달요청	49,540

착공(예정) 일 자	준공(예정) 일 자	설계변경내역(천원)			도급업체	감독공무원
		일 자	증감액	변경금액		
'95.10.10	'96. 2. 7	-	-	-	(주)현암물산	최준원

□ 문제점 및 대책

없 음

창리지구 오수처리장설치

□ 사업 개요

- 시행부서 : 환경보호과
- 위 치 : 미탄면 창리 730번지
- 사업규모 : 농촌오수처리장 1식(250m³/d)
- 사업비 : 274,000천원
 - 도비 : 142,500천원 군비 : 135,500천원
- 사업기간 : 1995. 10. 7 ~ 1996. 6. 17.
- 현 공 정 : 100%
- 추진상황

구 분	시행(품의) 일자	입찰 일자	계약 일자	계약 방법	계약금액(천원)
토목	1995.8.30	1995.9.29	1995.10. 6	입찰	203,105
전기	1995. 8.30		1995.10.13	수 의	10,340

구분	착공(예정) 일자	준공(예정) 일자	설계변경내역(천원)			도급업체	감독공무원
			일 자	증감액	변경금액		
토목	'95. 10. 7	'96.6.16	'96.5.13	감6,438	196,667	그린종합환경(주)	최준원
전기	'95. 10.16	'96.5.27	'95.12.19	감4,604	5,736	유성종합전기공사	박상호

※설계변경사유 : 차집관로 선형변경에 따라 증계펌프장(150m) 미설치에

따른 설계변경

□ 문제점

- 우수 및 하수 분리 차집관로 미설치
- 기존 하수관의 노후로 대부분 누수되고 약 40%만 오수처리장 유입

□ 대책

- 오수차집관로공사 : '97당초예산 계상
- 사업비 : 150,000원

산나물.찰옥수수가공 및 저온저장시설

□ 사업 개요

- 시행부서 : 도시과
- 위 치 : 미탄면 평안리 317번지
- 사업규모 : 건축1동 170평, 기계설비 1식
- 사업비 : 500,000천원
 - 국비:350,000 도비:75,000 군비:75,000 자부담:-
- 사업기간 : '96. 6. 25 ~ '96. 10. 31
- 현 공 정 : 80 %
- 추진상황

시행(품의) 일자	입찰일자	계약일자	계약방법	계약금액(천원)
'96. 5. 9	96. 6. 14	'96. 6. 21	일반경쟁입찰	374,804

착 공 (예정) 일 자	준 공 (예정) 일 자	설계변경내역(천원)			도급업체	감 독 공무원
		일 자	증감액	변경금액		
96. 6. 25	96. 10. 31				명성종합건설	신 승 호

□ 문제점 및 대책 : 없음

新加坡政府公報

— '96 下 半 期 —

郡政主要事業推進狀況

芳 林 面

방림4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 사업 개요

- 시행부서 : 방 립 면
- 위 치 : 평창군 방림면 방림4리
- 사업규모 : 포장 L=475m B=3.0 ~ 3.5m
- 사업비 : 45,000 천원(총사업비)
 - 국 비: - 도 비: - 군 비: 45,000 - 자부담:
- 사업기간 : '96. 10. 16 ~ 12. 14
- 현 공 정 : 30 %
- 추진상황

시행(품의)일자	입찰일자	계약일자	계약방법	계약금액(천원)	비 고
'96. 10. 8	-	10/10	수의계약	34,804	

착 공 (예정) 일 자	준 공 (예정) 일 자	설계변경내역(천원)			도급업체	감독공무원	비 고
		일 자	증감액	변경금액			
10/16	12/14				창하건설 김연하	지방토목 서기보 윤좌철	

※ 설계변경 사유

□ 문제점 및 대책

기존 퇴수관 11개소 노후 및 파손으로 설계변경후 배수관 교체가 필요하며 예산
잔액으로 잔여구간 포장 계획

계촌6리 농로포장공사

□ 사업 개요

- 시행부서 : 방 립 면
- 위 치 : 평창군 방림면 계촌6리
- 사업규모 : 포장 L=500m B=3.5m 옹벽 10m
- 사업비 : 50,000천원(총사업비)
 - 국 비: - 도 비: - 군 비:50,000 - 자부담:
- 사업기간 : '96. 8. 14 ~ 11. 20
- 현 공 정 : 70 %
- 추진상황

시행(품의)일자	입찰일자	계약일자	계약방법	계약금액(천원)	비 고
'96. 8. 7.	-	8/9	수의계약	46,671	

착 공 (예정) 일 자	준 공 (예정) 일 자	설계변경내역(천원)			도급업체	감독공무원	비 고
		일 자	증감액	변경금액			
8/9	11/20				창하건설 김연하	지방토목 주사보 임현수	

※ 설계변경 사유

□ 문제점 및 대책

공사감독공무원이 정산설계(옹벽제거)중으로 계약금액의 감소가 예상되며 예산 잔액으로 진입로 BOX설치 예정임.

계촌4리 세월교 사업

□ 사업 개요

- 시행부서 : 방 립 면
- 위 치 : 평창군 방림면 계촌4 리
- 사업규모 : 세월교 L=30m, B=5m, 홈관 800mm × 30본, 접속도로포장 20m×5m
- 사업비 : 30,000천원(총사업비)
 - 국 비: - 도 비: - 군 비:30,000 - 자부담:
- 사업기간 : '96. 9.10 ~ 11.8.
- 현 공 정 : 80 %
- 추진상황

시행(품의)일자	입찰일자	계약일자	계약방법	계약금액(천원)	비 고
'96. 9. 2	-	9/4	수의계약	32,254	

착 공 (예정) 일 자	준 공 (예정) 일 자	설계변경내역(천원)			도급업체	감독공무원	비 고
		일 자	증감액	변경금액			
9/10	11/8	10/28	△ 3,524	28,730	창하건설 김연하	지방토목 주사보 임현수	

※ 설계변경 사유

- 주요공종변경 및 현장사무실 미설치로 감독공무원 정산 설계
- 변경내역
 - 세월교 L = 20m, B = 5m, 홈관 600mm × 40본, 접속도로포장 84m×5m

계촌2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 사업 개요

- 시행부서 : 방 립 면
- 위 치 : 평창군 방림면 계촌 2리
- 사업규모 : 포장 1공구 L=160m B=3.0m , 2공구 L=190m B=3.0m
- 사업비 : 24,042 천원(총사업비)
 - 국 비: - 도 비:24,042 - 군 비: - 자부담:
- 사업기간 : '96. 5. 17 ~ 7. 31
- 현 공 정 : 100 %
- 추진상황

시행(품의)일자	입찰일자	계약일자	계약방법	계약금액(천원)	비 고
'96. 4. 12.	-	5/16	수의계약	22,580	

착 공 (예정) 일 자	준 공 (예정) 일 자	설계변경내역(천원)			도급업체	감독공무원	비 고
		일 자	증감액	변경금액			
5/17	7/31				선우건설 김정규	지방토목 서기 최준원	

※ 설계변경 사유

□ 문제점 및 대책

수동지구경지정리사업

□ 사업 개요

- 시행부서 : 건설과
- 위 치 : 방림면 계촌1리
- 사업규모 : 14.39 ha
- 사업비 : 473,203천원
 - 국비 : 266,476 도비 : 103,363 군비:103,364 자부담 :
- 사업기간 : '95. 11. 21 ~ '96. 7. 18
- 현공정 : 100 %
- 추진 상황

시행(품의)일자	입찰 일자	계약 일자	계약 방법	계약금액(천원)
95. 10. 20	95. 11. 10	95. 11. 15	공개 경쟁	303, 643

착공 (예정) 일자	준공 (예정) 일자	설계변경내역			도급업체	감독공무원
		일자	증감액	변경금액		
95. 11. 21	96. 7. 18	96. 5. 17	47, 279 (증)	350, 922	(주)우일	농조연리

※ 설계변경 사유 : 증액국고를 지원받아 수로관 512m, 들망태 1322㎡, 구조물 2개소, 상수도관 아설 790m 추가시공

□ 문제점 및 대책

- 없 습 -

방림-계촌-둔내간 군도확포장 사업(7차)

□ 사업 개요

- 시행부서 : 건설과
- 위치 : 평창군 방림면 계촌리
- 사업규모 : 도로포장 L = 1.32 km 도로포장 L=1.02km 울벽 L=4032m
- 사업비 : 447,600천원(총사업비)
 - 양여금: 313,320 - 군비: 134,280
- 사업기간 : '95. 8. 16 ~ '96. 8. 18
- 현공정 : 100 % (준공)
- 추진상황

시행(품의)일자	입찰일자	계약일자	계약방법	계약금액(천원)	비고
'96. 7.	-	'95. 8. 16	수의계약	388,600	

착공 (예정) 일자	준공 (예정) 일자	설계변경내역(천원)			도급업체	감독공무원	비고
		일자	증감액	변경금액			
'95. 8.16	'96. 6.18	'96. 6. 5	▷ 400	388,200	드림랜드	김찬수	

※ 설계변경 사유: 포장재의 골재채취시 당초 크랏싱으로 설계되었으나 홍수로 인하여 퇴적된 골재를 스크린으로 선별 변경하였음.

□ 문제점 및 대책

계촌교 가설공사

□ 사업 개요

- 시행부서 : 건설과
- 위치 : 평창군 방림면 계촌리
- 사업규모 : 교량가설 L = 43m B = 9.0m
- 사업비 : 381,410천원(총사업비)
 - 국비 : 289,871 - 군비 : 91,539
- 사업기간 : '96. 3. 18 ~ '96. 9. 30
- 현공정 : 95 %
- 추진상황

시행(품의)일자	입찰일자	계약일자	계약방법	계약금액(천원)	비고
'96. 2. 9	3/8	3/15	경쟁입찰	294,710	

착공 (예정) 일자	준공 (예정) 일자	설계변경내역(천원)			도급업체	감독공무원	비고
		일자	증감액	변경금액			
3/18	9/30	9/6	10,070	305,680	삼진종합 건설	김찬수	

※ 설계변경 사유: 당초 설계시 추정 노출암으로 설계하였으나 실지 터파기 결과 마사
계통의 토질로 판명되었기 교량하부공의 지반의 지력 보강을 위한
교량하부 4기의 기초를 확대기초를 보강 시공 하였습.

□ 문제점 및 대책

- 시공회사 공사추진 부진으로 공사지연 지체중에 있음('96. 11.10 준공예정)

산나물.찰옥수수가공 및 저온저장시설

□ 사업 개요

- 시행부서 : 도시과
- 위 치 : 방림면 계촌리
- 사업규모 : 건축1동 170평, 기계설비 1식
- 사업비 : 500,000천원
 - 국비:350,000 도비:75,000 군비:75,000 자부담:-
- 사업기간 : '96. 6. 27 ~ '96. 10. 31
- 현 공 정 : 85 %
- 추진상황

시행(품의) 일자	입찰일자	계약일자	계약방법	계약금액(천원)
'96. 5. 9	'96. 6.14	'96. 6. 21	일반경쟁입찰	374,804

착 공 (예정) 일 자	준 공 (예정) 일 자	설계변경내역(천원)			도급업체	감 독 공무원
		일 자	증감액	변경금액		
96. 6.27	96.10.31				(합) 대 원	신 승 호

□ 문제점 및 대책 : 없음

— '96 下 半 期 —

郡政主要事業推進狀況

大 和 面

목 차

- 하안미2리 농로확·포장사업(교부금사업) _____ 대 화 면
- 대화공영주차장 설치공사 (대화9리) _____ 대 화 면
- 대화체육관 건립 _____ 관광문화과
- 대화 쓰레기매립장 조성 _____ 환경보호과
- 신2리 대화산업개발 (규석광산) _____ 산 립 과
- 대화문화마을조성 _____ 건 설 과
- 농어촌도로 확·포장 (신2리~신4리) _____ 건 설 과
- 소규모 교량 재가설 (대화7리) _____ 건 설 과
- 하안미 기계화경작로 사업현장 _____ 건 설 과
- 상안미1리 도수로 _____ 건 설 과
-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_____ 건 설 과
- '96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 추진사항
 - 평창군 문화체육관 건립 _____ 관광문화과
 - 대화산업(주)개발현장 _____ 재무과, 산림과
 - 선애지구경지정리사업 _____ 건 설 과
 - 군도 4호선 (대화3리~개수리)확·포장 _____ 건 설 과
 - 미날교 가설공사 _____ 건 설 과

하안미2리 농로포장공사

□ 사업개요

- 시행부서 : 대화면
- 위 치 : 대화면 하안미2리
- 사업규모 : 농로포장 L=610M B=3.5M
- 사 업 비 : 47,615천원(총사업비 : 65,000천원)
 -국비 : 도비 : 군비: 65,000천원 자부담 :
- 사업기간 : 96. 10. 7 ~ 96. 12. 5
- 현 공 정 : 20%
- 추진상황

시행(품의)일자	입찰일자	계약일자	계약방법	계약금액(천원)
96. 9. 9		96.10. 5	수의계약	29,000

착 공 (예정) 일 자	준 공 (예정) 일 자	설계변경내역(천원)			도급업체	감독공무원
		일 자	증감액	변경금액		
96.10. 7	96.12. 5				태창건설(합) 유 인 섭	지방토목서기보 김 정 원

□ 문제점 및 대책 :

대화주차장설치사업

□ 사업개요

- 시행부서 : 대화면
- 위치 : 대화면 대화7,9리
- 사업규모 : 아스콘 35a(주차면수 : 110) L형측구 : 172m
- 사업비 : 63,840천원(총사업비 : 90,000천원)
 -국비 : 도비 : 군비: 90,000천원 자부담 :
- 사업기간 : 96. 8. 27 ~ 96. 11. 25
- 현공정 : 40%
- 추진상황

시행(품의)일자	입찰일자	계약일자	계약방법	계약금액(천원)
96. 8.23		96. 8.26	수의계약	43,000

착공 (예정) 일자	준공 (예정) 일자	설계변경내역(천원)			도급업체	감독공무원
		일자	증감액	변경금액		
96.8.27	96.11.25				덕천산업(주) 최동식	지역개발과 임현수

□ 문제점 및 대책 :

대화체육관 건립

사업개요

- 위치 : 대화면 대화리 979-1번지의외 2필지
- 규모 : 부지 1,515평 건물 827평
- 구조 : 지하 1층 지상 2층 철근콘크리트
- 사업비 : 2,400백만원
- 사업기간 : '95 ~ '97(3년차)

□ 사업비 확보

총소요액	확 보			'97.확보 계획
	계	도비	군비	
2,400 백만원	1,700	600	1,100	700백만원 도비500 군비200

□ 추진상황

- 건축공사 추진내역

발주	입찰	계약	계약방법	계약금액
'95.8.30	'95.10.25	'95.11.3	경쟁입찰	백만원 1,372

착공	준공(예정)	도급업체
'95.11.9	'97.12.31	(주)유성종합건설

○ 공사비 집행실적 및 계획

계	토지보상	관급자재	건축 및 부대공사비			
			계	건축	전기	소방
백만원 2,012	322 (’95 집행)	189 (’95집행)	1,501	1,372	98	31

○ 건축공사 추진실적 ————— 20%

- 기초 토목공사 및 기초콘크리트공사 완료
- 1층바닥 및 지중보 완료
- 2층 골조공사 진행중

□ ‘97.향후 투자계획 ————— 700백만원

- 집행확정액 대 부족 ————— 312백만원
- 물가상승 및 무대기계 음향시설등 보완 — 388백만원

‘97.예산 확보대책 (건의)

- 도비 500백만원 이상 지원요청
- 도비보조 확정후 부족액 전액 준비확보(’97당초예산)

대화쓰레기매립장 조성

□ 사업 개요

- 시행부서 : 환경보호과
- 위치 : 평창군 대화면 대화8리 734 - 1
- 사업규모 : 쓰레기매립장 및 소각로, 기타 부대시설
- 사업비 : 986,600천원(총 사업비 2,486,000천원)
 - 군비 : 986,600천원
- 사업기간 : 1993. 1. 1 ~ 1996. 12. 31
- 현 공 정 : 30%
- '96 추진상황
 - 사업량 : 부지매입(32,244㎡), 소각로설치 1기(300kg/hr), 재활용선별창고 1동(165㎡), 기본설계용역, 캔압축기 1대, 자동상차용기 1대
 - 기 투자액 : 546백만원

□ 문제점

- 쓰레기처리시설 설치승인신청 반려(강원도)
 - 보완요지
 - 환경성검토내용과 설계내용이 상이함
(침출수처리시설, 차수막)
 - 공사시 토사유출 방지시설 검토 미흡
 - 침출수로 인한 지하수 오염도검사정 재검토
 - 기타 오염부하량, 수질오염, 하천에 미치는 영향등에 대한 검토미흡
- 사업비중 국비(1,500백만원) '97당초예산반영에 따라 군비이월 불가피.

□ 대 책

- 환경성검토조서 및 실시설계서 '96년도중 보완, '97년도 1/4분기중 설치승인 완료
- 국비확보 즉시 전체사업을 포괄 시행함으로써 사업의 일관성 및 완벽한 마무리.

대 화 산 업

□. 사 업 개 요

○ 시행부서 : 산림과

○ 위 치 : 평창군 대화면 신리 산 214번지

○ 사업규모 : 38,043㎡

○ 사 입 비 : 천원 (총 사업비 : 천원)

- 국 비 : 도 비 : 군 비 : 자부담 :

○ 사업기간 : '96. 6. 15 ~ '98. 12. 31.

○ 헌 공 정 : 24%

□ 문제점 및 대책

'96. 6. 21일 무단반출량 22,021㎡분에 대한 폐석료 2,352,000원을 추징완료하였으며

'96. 6. 8일자로 총 291,655㎡을 허가처리하여 현재 사업(채취)중에 있고 위법사항은

없으며 하단부 광해방지 시설을 위하여 중간복구토목 조치중에 있음.

대화문화마을 조성사업

□ 사업 개요

- 시행부서 : 건설과
- 위 차 : 대화면 대화 5리
- 사업규모 : 부지조성 19,109평
- 사업비 : 3,828,813천원 (공사비: 2,131,813천원, 용지매수비 1,697,000천원)
 - 국비 : 1,492,269 도비 : 319,772 군비:319,772 용자:1,697,000
- 사업기간 : '95. 7. 6 ~ '96. 10. 25
- 현공정 : 100 %
- 추진 상황

시행(품의)일자	입찰 일자	계약 일자	계약 방법	계약금액(천원)
94. 8. 11 (위탁시행)	95. 6. 23	95. 6. 30	위탁 계약	토목 : 1,208,449 전기 : 41,415 한전납입:72,496

착공 (예정) 일자	준공 (예정) 일자	설계변경내역			도급업체	감독공무원
		일자	증감액	변경금액		
95. 7. 6	96. 10. 25	-	-	-	두일 건설	농진강원지사 전인구

※ 설계변경 사유 :

□ 문제점 및 대책

- 11월말 분양시 동절기 도래로 '96주택신축 착공 불가한바 '97년 조기 착공토록 행정지도 및 동당 2천만원 용자 조치

신2-4리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 사업 개요

- 시행부서 : 건설과
- 위 치 : 대화면 신리
- 사업규모 : 도로 확·포장 L=2.16km (B=6.5m)
- 사업비 : 715,453천원
 - 양여금 : 715,453 군 비 : -
- 사업기간 : '96. 6. 5 ~ 97. 5. 20
- 현 공 정 : 40 %
- 추 진 상 황

시행(품의)일자	입찰 일자	계약 일자	계약 방법	계약금액(천원)
96. 4. 30	96. 5. 29	96. 6. 3	경쟁입찰	444,474

착 공 (예 정) 일 자	준 공 (예 정) 일 자	실 계 변 경 내 역			도급업체	감독공무원
		일 자	증감액	변경금액		
96. 6. 5	97. 5. 30	-	-	-	(주)동화건설	정 기 화

※ 실계변경 사유 :

□ 문제점 및 대책

- 년내 절대공기 부족으로 '97년 이월완공 전망

대화7리 노후교량 재가설사업

□ 사업 개요

- 시행부서 : 건설과
- 위 치 : 대화면 대화리
- 사업규모 : 교량가설 L=40M (B=6.5m), 돌망태 A=240㎡
- 사업비 : 215,220천원
 - 국비 : 군비: 215,220
- 사업기간 : '96. 5. 29 ~ 96. 11. 24
- 현공정 : 55 %
- 추진상황

시행(품의)일자	입찰 일자	계약 일자	계약 방법	계약금액(천원)
96. 4. 16	96. 5. 17	96. 5. 23	경쟁입찰	148,132

착공 (예정) 일자	준공 (예정) 일자	설계변경내역			도급업체	감독공무원
		일자	증감액	변경금액		
96. 5. 29	96. 11. 24	-	-	-	(주)대왕토건	정기화

※ 설계변경 사유 :

□ 문제점 및 대책

- 없 습 -

하안미 기계화정작로

□ 사업 개요

- 시행부서 : 건설과
- 위 치 : 대화면 하안미6리
- 사업규모 : 콘크리트 포장 L = 2.8Km, B = 3.0m, 수로관 부설 L = 706m(500×500)
- 사 업 비 : 261,140천원
 - 국 비 : 215,040 도 비 : 26,880 군 비: 19,220 자 부 담 :
- 사업기간 : '96. 9. 9 ~ '96. 12. 31
- 현 공 정 : 10 %
- 추 진 상 황

시행(품의)일자	입찰 일자	계약 일자	계 약 방 법	계약금액(천원)
96. 7. 20	96. 8. 28	96. 9. 3	공개 경쟁	164,577

작 공 (예 정) 일 자	준 공 (예 정) 일 자	설 계 변 경 내 역			도급업체	감독공무원
		일 자	증감액	변경금액		
96. 9. 9	96. 12. 31	-	-	-	(합) 대 원	지방토목서기 최 창 정

※ 설계변경 사유 :

□ 문제점 및 대책

- 농로폭이 좁아 포장폭 3m 및 수로부지 확보가 어려워 주민과 협의 시행

상안미 1리 도수로 개수공사

□ 사업 개요

- 시행부서 : 건설과
- 위 치 : 대화면 상안미1리
- 사업규모 : 도수로개수 L = 190m(0.8×0.8)
- 사업비 : 27,145천원
 - 국비 : 도비 : 군비: 27,145천원 부담 :
- 사업기간 : '96. 4. 25 ~ '96. 6. 3('96. 5. 6공사중지)
- 현공정 : %
- 추진상황

시행(품의)일자	입찰 일자	계약 일자	계약 방법	계약금액(천원)
96. 4. 22	-	96. 4. 24	수의계약	22. 320

착공 (예정) 일자	준공 (예정) 일자	설계변경내역			도급업체	감독공무원
		일자	증감액	변경금액		
96. 4. 25	96. 6. 3	-	-	-	화신건설(주)	지방토목 8급 최참정

※ 설계변경 사유 :

□ 문제점 및 대책

- 농작물 생육기간중 공사중지 하였으나 10. 25일 중지해제 및 사업착수로 동결기전 마무리 계획임('96. 11. 20일경 준공예정)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 사업 개요

- 시행부서 : 건설과
- 위 치 : 대화면 하안미 3, 4, 5리
- 사업규모 : 취수시설 1식, 도수시설 1식, 송수시설 1식, 배수시설 1식
- 사업비 : 417,716천원
 - 국비 : 290,710 도비 : 99,721 군비 : 27,285 자부담 :
- 사업기간 : '96. 9. 10 ~ '97. 3. 8
- 현공정 : 15 %
- 추진상황

시행(품의)일자	입찰 일자	계약 일자	계약 방법	계약금액(천원)
96. 7. 20	96. 8. 28	96. 9. 5	공개 경쟁	257.060

작 공 (예정) 일 자	준 공 (예정) 일 자	설 계 변 경 내 역			도급업체	감독공무원
		일 자	증감액	변경금액		
96. 9. 10	96. 3. 8	-	-	-	(주)드림랜드	지방토목 8급 최창경

※ 설계변경 사유 :

□ 문제점 및 대책

- 취수원 위치 선정에 따른 주민 의견 상이 및 농작물 수확 지연으로 사업추진이 늦어지나 주민과 계속 협의 진행으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기하고자 함.

— '96 下 半 期 —

郡政主要事業推進狀況

蓬 坪 面

목 차

- 농어촌 마을안길포장 _____ 봉 평 면
- 진조리 수해복구공사 _____ 봉 평 면
- 보광휘닉스파크 골프장 건설 _____ 관광문화과
- 봉평도읍정비 마무리 _____ 도 시 과
- 남안교 가설 _____ 도 시 과
- 봉평상수도 시설확장 _____ 도 시 과
- '96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 추진사항
 - (주)보광휘닉스파크골프장개발및오수처리시설관리 — 환경보호과
 - 평촌1리 광희중 불법축사건축관련 _____ 축 산 과
 - 봉평도읍정비사업 _____ 도 시 과
 - 봉평상수도시설확장사업 _____ 도 시 과

원길2리 마을 안길포장공사

□ 사업 개요

- 시행부서 : 봉평면
- 위치 : 봉평면 원길2리 본동
- 사업규모 : CON'S L = 360M. B = 4.0M
- 사업비 : 30,200 천원 (총사업비 : 천원)
 — 국비 : 도비 : 자부담 :
- 사업기간 : 96. 5. 2 ~ 96. 6. 10
- 현금정 : 100 %
- 추진상황

시행(품의)일자	입찰일자	계약일자	계약방법	계약금액(천원)
96. 4. 10		96. 5. 2	수의계약	15,690

착공 (예정) 일자	준공 (예정) 일자	설계변경내역(천원)			도급자	감독공무원
		일자	증감액	변경금액		
96. 5. 2	96. 7. 25				평창군, 진부면 송정리 12-1번지 (주)석청건설민두식	토목 8 급 김재열

※ 설계변경사유 :

□ 문제점 및 대책 :

진조리수해복구공사

□ 사업개요

- 시행부서 : 봉평면
- 위 치 : 봉평면 진조리
- 사업규모 : box1.5×2.0 L = 5.0M 옹벽 L = 35m
- 사업비 : 41,253 천원 (총사업비 : 14,681천원)
- 국 비 : 도 비 : 자 부 담 :
- 사업기간 : 95. 12. 26 ~ 96. 6. 4
- 현 공 정 : 100 %
- 추진상황

시행(품의)일자	입찰일자	계약일자	계약방법	계약금액(천원)
95. 11. 24		95. 12. 26	수의계약	36,624

착공 (예정) 일자	준공 (예정) 일자	설계변경내역(천원)			도 급 자	감독공무원
		일 자	증감액	변경금액		
95. 12. 26	96. 7. 15				영월군, 읍 하송리 184-1번지 (합)육천건설문갑신	토목 8 급 김 재 열

※ 설계변경사유 :

□ 문제점 및 대책 :

보광휘닉스파크 골프장 건설사업

□ 사업개요

- 사업자 : (주)보광환경개발 (대표이사 정준시)
- 위치 : 봉평면 면온리 산249번지의외일원
- 사업규모
 - 용 지 : 1,055,989m²(코스면적 321,510m²)
 - 시설규모 : 18홀,72파,6,415m
 - 건축면적 : 5,624.63m²(클럽하우스 3,424.13m²)
- 사업비 확보
 - 총소요 민자 30,000백만원
- 사업기간 : '95. 2 -'98. 2 (착공후 36개월)
- 현 공 정 : 83%
- 주요추진상황
 - 1993. 3.30. 국토이용계획변경 결정(강원도)
 - 1993.10.23. 환경영향평가협의(원주지방환경관리청)
 - 1994.12. 5. 사업계획승인(강원도)
 - 1995. 2.24. 착공계획서제출

봉평 도읍정비 사업

□ 사업 개요

- 시행부서 : 도시과
- 위 치 : 봉평면 창동리
- 사업규모 : 도시계획도로확포장 L=1661m, B=8-15m
- 사업비 : 553,000천원(총사업비 : 4,228,000천원)
 - 국비: 도비: 군비:553 자부담:
- 사업기간 : '93. 10.13 ~ '96. 11. 15
- 현 공 정 : 60 %
- 추진상황

시행(품의) 일자	입찰일자	계약일자	계약방법	계약금액(천원)
'93. 8. 6	-	'93.10.11	일반경쟁입찰	418,308

착 공 (예정) 일 자	준 공 (예정) 일 자	설계변경내역(천원)			도급업체	감 독 공무원
		일 자	증감액	변경금액		
93.10.13	96.11.15	95.12.15	증223,499	836,007	부영산업(주)	임 광 수

* 설계변경 사유 : 물가상승에 따른 등락단가적용 변경

□ 문제점 및 대책

- . 건물 보상수령후 미철거로 인한 시설공사 지연(9가구)
- . 건물철거 촉구 및 지속적 독려로 사업추진

남안교 가설 공사

□ 사업 개요

- 시행부서 : 도시과
- 위 치 : 봉평면 창동리
- 사업규모 : 교량 L=145m, B= 9m, 접속도로 L=221m, B= 8m
- 사업비 : 458,891천원(총사업비 : 975,545천원)
 - 국비:264,951 도비:56,775 군비:137,165 자부담:
- 사업기간 : '95.12.26 ~ '96. 12.31
- 현 공 정 : 85 %
- 추진상황

시행(품의) 일자	입찰일자	계약일자	계약방법	계약금액(천원)
'95. 11. 3	'95.12.15	'95.12.22	일반경쟁입찰	252,195

착 공 (예정) 일 자	준 공 (예정) 일 자	설계변경내역(천원)			도급업체	감 독 공무원
		일 자	증감액	변경금액		
95.12.26	96.12.31				부영산업(주)	임 광 수

□ 문제점 및 대책 : 없음

봉평상수도 시설확장사업

□ 사업 개요

- 시행부서 : 도시과
- 위 치 : 봉평면 일원 (창동, 원길, 무이리)
- 사업규모 : 시설확장 Q = 8,700T/D
- 사업비 : '95이월 1,900,000천원, (총사업비 : 7,600,000천원)
'96추진 1,250,000천원
- 국비: - 도비: - 군비:1,250,000 차부담(보광부담금):1,900,000
- 사업기간 : '95. 12. ~ '98. 12.
- 현 공 정 : 52 % - 1차사업 (총공사 진도 : 20%)
- 추진상황

구 분	시행(품의)일자	입찰일자	계약일자	계약방법	계약금액(천원)
1 차공사	'95. 11. 15	95.12.13	'95. 12.15	경 쟁	1,248,434
2 차공사	'96. 9. 2	-	'96. 9. 18	수 의	790,866

착 공 (예정) 일 자	준 공 (예정) 일 자	설계변경내역(천원)			도급업체	감독공무원
		일 자	증감액	변경금액		
95.12.19	96.12. 5	-	-	-	경산건설(주)	토목 7급
96. 9.20	97. 7.16	-	-	-	김 종 남	고 준 태

□ 문제점 및 대책

- 정수장부지 토지사용승낙 협의지연 및 취수원 위치 미확정으로 취.정수장 관련 사업추진 지연
- 토지소유자 4명중 3명 징구 1명 협의중.

— '96 下 半 期 —

郡政主要事業推進狀況

龍 坪 面

목 차

- 농어촌마을길 포장 _____ 용 평 면
- 집수관보완 및 여과사 교체 _____ 용 평 면
- 용전리 소형보 보수 _____ 용 평 면
- 속사2리 세월교 마무리 _____ 용 평 면
- 백옥포리 양수시설 _____ 용 평 면
- 소규모 교량 재가설 _____ 용 평 면
- 청소년수련장 조성 _____ 복 지 과
- 전원주택단지 조성 (재산리 금당마을) _____ 농정과, 도시과
- 교통소통대책(용전교가설) _____ 건 설 과
- 장평리 도수로 _____ 건 설 과
- 용전리 받기반 정비 _____ 건 설 과
- '96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 추진사항
 - 장평 농촌오수처리시설 _____ 환경보호과
 - 재산지구 받기반 정비사업 _____ 건 설 과
 - 저온저장고 사업 _____ 도 시 과
 - 농어촌 취락구조 개선지 기반시설 확충사업 _____ 도 시 과

농촌마을길 포장사업

□ 사업개요

- 시행부서 : 용평면
- 위 차 : 용평면 장평1리
- 사업규모 : 310 M × 3.5 M
- 사업비 : 23,505 천원 (총사업비 : 25,100천원)
 - 국 비 : 도 비 : 군 비 : 25,100 자부담 :
- 사업기간 : '96. 4. 29 ~ '96. 6. 10
- 현 공 정 : 100 %
- 추진상황

시행(품의)일자	입찰일자	계약일자	계약방법	계약금액(천원)
'96. 4. 10		'96. 4. 25	수 의	13,900

착 공 (예정) 일 자	준 공 (예정) 일 자	설계변경내역(천원)			도급업체	감독공무원
		일 자	증감액	변경금액		
'96. 4. 29	'96. 6. 10				태창건설 유인섭	지방토목7 남궁경

□ 문제점 및 대책

농촌마을길 포장사업

□ 사업개요

- 시행부서 : 용평면
- 위 치 : 용평면 속사1리
- 사업규모 : 377 M × 3.5 ~ 4.0 M
- 사업비 : 21,929 천원 (총사업비 : 23,700천원)
 - 국 비 : 도 비 : 군 비 : 23,700 자부담 :
- 사업기간 : '96. 5. 2 ~ '96. 7. 15
- 현 공 정 : 100 %
- 추진상황

시행(품의)일자	입찰일자	계약일자	계약방법	계약금액(천원)
'96. 4. 10		'96. 5. 2	수 의	13,020

착 공 (예정) 일 자	준 공 (예정) 일 자	설계변경내역(천원)			도급업체	감독공무원
		일 자	증감액	변경금액		
'96. 5. 2	'96. 7. 15				석칭건설 민 두 식	지방토목7 남 궁 경

□ 문제점 및 대책

농촌마을길 포장사업

□ 사업개요

- 시행부서 : 용평면
- 위 치 : 용평면 노동리
- 사업규모 : 80 M × 3.0 M
- 사업비 : 4,760 천원 (총사업비 : 5,400천원)
 - 국 비 : 도 비 : 군 비 : 5,400 자부담 :
- 사업기간 : '96. 9. 1 ~ '96. 9. 30
- 현 공 정 : 100 %
- 추진상황

시행(품의)일자	입찰일자	계약일자	계약방법	계약금액(천원)
'96. 8. 25		'96. 8. 30	수 의	4,760

작 공 (예정) 일 자	준 공 (예정) 일 자	설계변경내역(천원)			도급업체	감독공무원
		일 자	증감액	변경금액		
'96. 9. 1	'96. 9. 30				태창건설 유 인 섭	지방토목7 남 궁 경

□ 문제점 및 대책

농촌마을길 포장사업

□ 사업개요

- 시행부서 : 용평면
- 위치 : 용평면 노동리
- 사업규모 : 220 M × 3.5 M
- 사업비 : 15,433 천원 (총사업비 : 16,600천원)
 - 국비 : 도비 : 군비 : 16,600 자부담 :
- 사업기간 : '96. 4. 25 ~ '96. 6. 23
- 현공정 : 100 %
- 추진상황

시행(품의)일자	입찰일자	계약일자	계약방법	계약금액(천원)
'96. 4. 10		'96. 4. 24	수 의	8,566

착공 (예정) 일자	준공 (예정) 일자	설계변경내역(천원)			도급업체	감독공무원
		일자	증감액	변경금액		
'96. 4. 25	'96. 6. 23				화신건설 최규택	지방토목7 남궁경

□ 문제점 및 대책

농촌마을길 포장사업

□ 사업개요

- 시행부서 : 용평면
- 위 치 : 용평면 백옥포1리
- 사업규모 : 150 M × 4.0 M
- 사업비 : 12,260 천원 (총사업비 : 13,200천원)
 - 국비 : 도비 : 군비 : 13,200 자부담 :
- 사업기간 : '96. 4. 27 ~ '96. 6. 18
- 현공정 : 100 %
- 추진상황

시행(품의)일자	입찰일자	계약일자	계약방법	계약금액(천원)
'96. 4. 10		'96. 4. 25	수 의	6,960

착공 (예정) 일자	준공 (예정) 일자	실계변경내역(천원)			도급업체	감독공무원
		일자	증감액	변경금액		
'96. 4. 27	'96. 6. 18				성도건설 윤인회	지방토목7 남궁경

□ 문제점 및 대책

집수관 보완및 여과사 교체 사업

□ 사업 개요

- 시행부서 : 용평면
- 위 치 : 용평면 백옥포리
- 사업규모 : 이과사 교체 147.2 m
자갈세척 및 투입 92 m
- 사 입 비 : 26,400 천원 (총사업비 : 30,000천원)
- 국 비 : 도 비 : 군 비 : 30,000 자부담 :
- 사업기간 : '96. 9. 1 ~ '96. 7. 23
- 현 공 정 : 100 %
- 추진상황

시행(품의)일자	입찰일자	계약일자	계약방법	계약금액(천원)
'96. 5. 10		'96. 5. 23	수 의	26,400

착 공 (예정) 일 자	준 공 (예정) 일 자	설계변경내역(천원)			도급업체	감독공무원
		일 자	증감액	변경금액		
'96. 6. 1	'96. 7. 23	'96. 7. 18	- 4,500	21,900	한 국 환 경 공 업 총 협 회	지방토목7 남 궁 경

※ 설계변경 사유 : 이과사 자갈의 보존상태가 양호하이 기존 자갈 재사용

□ 문제점 및 대책

소형보보수사업

□ 사업개요

- 시행부서 : 용평면
- 위 치 : 용평면 백옥포, 재산리
- 사업규모 : 보 전체 보수 - 18 M
 도수로 보수 - 110 M
- 사업비 : 22,000 천원 (총사업비 : 25,000천원)
 - 국비 : 도비 : 군비 : 25,000 자부담 :
- 사업기간 : '96. 9. 13 ~ '96. 11. 1
- 현공정 : 80 %
- 추진상황

시행(품의)일자	입찰일자	계약일자	계약방법	계약금액(천원)
'96. 9. 2		'96. 9. 9	수 의	22,000

착공 (예정) 일자	준공 (예정) 일자	설계변경내역(천원)			도급업체	감독공무원
		일자	증감액	변경금액		
'96. 9. 13	('96. 11. 1)				남학건설 김남철	지방토목7 남궁경

□ 문제점 및 대책

- 당초 용전리 수리시설 보수공사비였으나 담을 전으로 전환함에 따라 백옥포, 재산리로 사업장을 변경함.
- 사업장 주변의 농작물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농작물 수확이후로 공기를 건강하여 추진함.

세 월 교 마 무 리 사 업

□ 사업개요

- 시행부서 : 용평면
- 위 치 : 용평면 속사2리
- 사업규모 : 압거 5장간 (3.0×2.5M)
날개벽 1개소
- 사 업 비 : 27,643 천원 (총사업비 : 30,000천원)
- 국 비 : 도 비 : 군 비 : 30,000 자부담 :
- 사업기간 : '96. 9. 1 ~ '96. 10. 31
- 현 공 정 : 70 %
- 추진상황

시행(품의)일자	입찰일자	계약일자	계약방법	계약금액(천원)
'96. 8. 23		'96. 8. 28	수 의	18,500

작 공 (예정) 일 자	준 공 (예정) 일 자	설계변경내역(천원)			도급업체	감독공무원
		일 자	증감액	변경금액		
'96. 9. 2	(96. 10. 31)				삼광건설 배 선 국	지방토목7 남 궁 경

□ 문제점 및 대책

- 공사추진시 인근 농경지의 농작물 출하에 지장을 줄 것으로 판단되어 농작물 수확후 공사를 추진함.

양수시설설치사업

□ 사업개요

- 시행부서 : 용평면
- 위 치 : 용평면 백옥포리
- 사업규모 : 1 식
- 사업비 : 60,000 천원 (총사업비 : 60,000천원)
 - 국비 : 도비 : 군비 :60,000 자부담 :
- 사업기간 :
- 현 공 정 : 설계 추진중
- 추진상황

시행(품의)일자	입찰일자	계약일자	계약방법	계약금액(천원)

착공 (예정) 일자	준공 (예정) 일자	설계변경내역(천원)			도급업체	감독공무원
		일 자	증감액	변경금액		

□ 문제점 및 대책

- 사업장이 농경지에 위치하여 공사발주시 농작물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농산물 수확이 완료되는 10월하순 추진예정임.

소규모 교량 제가설 사업

□ 사업 개요

- 시행부서 : 용평면
- 위 치 : 용평면 용진리 방턱골
- 사업규모 : -교량1개소 신축
-용비 105 m. 포장 70 m.
- 사업비 : 54,453 천원 (총사업비 : 60,000천원)
- 국 비 : 도 비 : 군 비 : 60,000 자부담 :
- 사업기간 : '96. 10. 10 ~ '96. 12. 08.
- 현 공 정 : 20 %
- 추진상황

시행(품의)일자	입찰일자	계약일자	계약방법	계약금액(천원)
'96. 09. 30		'96. 10. 04.	수 의	40,683

착 공 (예정) 일 자	준 공 (예정) 일 자	설계변경내역(천원)			도급업체	감독공무원
		일 자	증감액	변경금액		
'96. 10. 10.	('96. 12. 8)	'96. 7. 18	- 4,500	21,900	석청건설 민두식	지방토목7 남궁경

※ 설계변경 사유 :

□ 문제점 및 대책

-방턱골 마을과 국도를 연결하는 유일한 교량으로 농산물 유통시 공사를 추진 할 경우,
차량통행이 곤란하이 농작물 수확완료후 공사를 발주함.

한국 청소년수련마을 건립공사

□사업개요

- 시행부서 : 문화체육부
- 위치 : 평창군 용평면 배옥포리 일원
- 사업규모
 - 부지면적 : 478,099㎡ (144,642평)
 - 주요시설 : 인수동 지하1층, 지상4층 2,669평
숙박동 지하1층, 지상3층 2,100평
기타 건축물 23개동 847평
진입도로 가설 940m (B=10m)
교량가설 60m
- 사업비 : 23,660백만원
- 사업기간 : '94. 3 ~ '97. 6.
- 현공정 : 63%
- 추진상황
 - 인수동 : 건물 외골조 3층 완료
 - 숙박동 : 건물 외골조 완료, 조적공사중
 - 진입도로 개설 : 토공완료
 - 교량가설 : 600m 가설 완료
- 시공자 : (주) 남경건설
- 감리자 : 조달청

전원주택 조성사업

□ 사업 개요

- 관련부서 : 농정과
- 위 치 : 용평면 재산리 1524번지 일원
- 사업규모
 - 농지전용허가 5,758㎡ ('94. 6. 20)
 - 농지전용변경허가 ('96. 4. 27)
- 사업자 : 서울 서초구 방배동 924-17번지 박 상 규
(580306 - 1068419)
- 사업비 : 1,450백만원 (자부담)
- 사업기간 : '94. 7. ~ '96. 12. 31

용전교가설사업

□ 사업 개요

- 시행부서 : 건설과
- 위 치 : 용평면 용전리
- 사업규모 : 교량가설 L=40M (B=11.0m)
- 사업비 : 590,671천원
 - 양여금 : 434,000 균 비: 156,671
- 사업기간 : '96. 6. 10 ~ 96. 12. 31
- 현 공 정 : 50 % (년내 준공가능)
- 추 진 상 황

시행(품의)일자	입찰 일자	계약 일자	계약 방법	계약금액(천원)
96. 4. 30	96. 5. 29	96. 6. 5	경쟁입찰	310,192

착 공 (예 정) 일 자	준 공 (예 정) 일 자	설 계 변 경 내 역			도급업체	감독공무원
		일 자	증감액	변경금액		
96. 6. 10	96. 11. 7	-	-	-	(주)우림토건	김 찬 수

※ 설계변경 사유 :

□ 문제점 및 대책

- 없 습 -

장평도수로 개수사업

□ 사업 개요

- 시행부서 : 건설과
- 위 치 : 용평면 장평 2리
- 사업규모 : 도수로개수 L = 170m(1.0×0.7), 집수정 1개소, 홈판부설 L = 5m
- 사업비 : 27,234천원
 - 국비 : 도비 : 군비: 27,234 자부담 :
- 사업기간 : '96. 5. 2 ~ '96. 6. 10('96. 5. 6공사중지)
- 현공정 : - %
- 추진상황

시행(품의)일자	입찰 일자	계약 일자	계약 방법	계약금액(천원)
96. 4. 22	-	96. 4. 24	수의 계약	22,540

작 공 (예 정) 일 자	준 공 (예 정) 일 자	설 계 변 경 내 역			도급업체	감독공무원
		일 자	증감액	변경금액		
96. 4. 25	96. 6. 10	-	-	-	창하건설(주)	지방토목 8급 최창경

※ 설계변경 사유 :

□ 문제점 및 대책

- 농작물 생육기간중 공사 중지하였으나 10. 25일 중지 해제 및 사업 착수로 동절기전 마무리 계획('96. 11. 20일경일경 준공예정)

용전지구 받기반정비사업

□ 사업 개요

- 시행부서 : 건설과
- 위치 : 용평면 용전, 속사리
- 사업규모 : 39ha
- 사업비 :
 - 국비 : 도비 : 군비: 자부담 :
- 사업기간 :
- 현공정 : 실시설계중
- 추진상황

시행(품의)일자	입찰 일자	계약 일자	계약 방법	계약금액(천원)

작공 (예정) 일자	준공 (예정) 일자	설계변경내역			도급업체	감독공무원
		일자	증감액	변경금액		

※ 설계변경 사유 :

□ 문제점 및 대책

- 실시설계중

— '96 下 半 期 —

郡政主要事業推進狀況

珍 富 面

목 차

- 오대개발 _____ 산 립 과
- 호명리 수해복구사업 _____ 건 설 과
- 송정1리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 _____ 건 설 과
- 간평1리 연립주택 2동 _____ 도 시 과
- 진부 광역상수도 시설공사 _____ 도 시 과
- '96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 추진사항
 - 상월오개리 임도피해 복구사업 _____ 산 립 과
 - 마평1리 수해복구 사업 _____ 건 설 과
 - 거문리·호명리 수해복구사업 _____ 건 설 과
 - 다가구주택 및 식당 건축사업 _____ 도 시 과
 - 진부상수도 시설 확장 사업 _____ 도 시 과

오대개발사업

□ 사업개요

- 시행부서 : 산림과 보호계
- 위 치 : 진부면 하전부리 산478번지외5필지
- 사업규모 : 54,357㎡
- 사업비 : 330,018천원(산림형질변경 적지복구비) 자부담
- 허가기간 : '95. 2. 13 - '97. 12. 31.
- 현 공 정 : 55%

□ 문제점 및 대책

- 상기 장소는 최초 '89. 12. 26. 토석채취허가를 득하여 계속 기간연기 허가를 받아 레미콘용 골재를 생산하고 있는 장소이며,
- 현재까지 위법사항 없으며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호명지구수해복구사업

□ 사업 개요

- 시행부서 : 사회진흥과
- 위 치 : 진부면 호명리
- 사업규모 : 석축 L=568m, 암거 2개소, 돌망태 678m
- 사 업 비 : 224,276천원 (총사업비:2,194,913천원)
 - 국 비 : 106,172 도 비 : 23,617 군 비:94,487 자 부 담 :
- 사업기간 : '96. 3. 12 ~ '96. 7. 30
- 현 공 정 : 100 %
- 추 진 상 황

시행(품의)일자	입찰 일자	계약 일자	계약 방법	계약금액(천원)
96. 1. 8	96. 3. 6	96. 3. 12	일반 경쟁	156.405

차 공 (예 정) 일 자	준 공 (예 정) 일 자	설 계 변 경 내 역			도급업체	감독공무원
		일 자	증감액	변경금액		
96. 3. 21	96. 7. 30	96. 7. 15	35,000	191,405	강원종합건설	지방토목 7급 김 만 중

※ 설계변경 사유 : 현지 여건 변동 및 물량증가

□ 문제점 및 대책

- 없 습 -

송정2보 수해복구사업

□ 사업 개요

- 시행부서 : 건설과
- 위 치 : 진부면 송정 1리
- 사업규모 : 취입보 L= 101m, 도수로 L= 30m, 어도 L= 20m
- 사업비 : 147,944천원 (총사업비: 162,346천원)
 - 국비 : 109,478 도비 : 19,233 군비: 19,233 자부담 :
- 사업기간 : '95. 12. 26 ~ '96. 7. 3
- 현공정 : 100 %
- 추진상황

시행(품의)일자	입찰 일자	계약 일자	계약 방법	계약금액(천원)
95. 12. 2	95. 12. 18	95. 12. 22	공개 경쟁	106,944

착공 (예정) 일자	준공 (예정) 일자	설계변경내역			도급업체	감독공무원
		일자	증감액	변경금액		
95. 12. 26	96. 7. 3	-	-	-	청호건설(합)	지방토목 8급 최창경

※ 설계변경 사유 :

□ 문제점 및 대책

- 없 습 -

간평리 연립 2동

□ 건축물 현황(공동주택)

- 소유자 :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644 대우사원주택 이병준외6인
- 건축위치 : 진부면 간평리 220-1
-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건축면적 : 429.86㎡
- 연면적 : 1,881.91㎡
- 대지면적 : 1,048㎡
- 건축허가 : 제85호 '92. 11. 13
- 착공일 : '93. 7. 29

□ 건축물 현황(다세대주택)

- 소유자 : 경기도 안성군 안성읍 동본리 61번지 안성건설(주) 유성준
- 건축위치 : 진부면 간평리 246-4.5(2동 16세대)
-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건축면적 : 235.84㎡
- 연면적 : 759.36㎡
- 대지면적 : 611㎡
- 건축허가 : 제75호 '95. 6. 3
- 착공일 : '95. 6. 5
- 준공일 : '95. 12. 1

진부상수도 시설확장사업

□ 사업 개요

- 시행부서 : 도시과
- 위 치 : 진부면 상진부, 하진부리
- 사업규모 : 시설확장 Q = 9,500T/D
- 사업비 : '95이월 2,500,000천원, (총사업비 : 7,230,000천원)
'96추진 1,500,000천원
- 국비:1,250,000 도비:1,250,000 군비:1,500,000 자부담:-
- 사업기간 : '95. 6. ~ '98. 12.
- 현 공 정 : 75 % - 1차사업 (총공사 진도 : 30%)
- 추진상황

구 분	시행(품의)일자	입찰일자	계약일자	계약방법	계약금액(천원)
1 차공사	'95. 5. 8	95. 6.16	'95. 12.15	경쟁	1,641,613
2 차공사	'96. 6. 24	96.10.11		경쟁	1,012,570

착 공 (예정) 일자	준 공 (예정) 일자	설계변경내역(천원)			도급업체	감독 공무원
		일 자	증감액	변경금액		
95. 6.26	96. 8.19	95.12.15	증 182,388	1824,444	명일종합건설	토목 7급
96.10.25	97. 9.30	-	-	-	조원건설(주)	고준태

□ 문제점 및 대책

- 1차공사 시공업체의 자금 압박으로 공사지연, 잔여 전체공정에 지장 초래 및 2차공사 사업비 1회추경 예산확보로 발주시기 지연
- 1차공사 보증회사(진양)로 하여금 잔여공정 마무리토록 지시

— '96 下 半 期 —

郡政主要事業推進狀況

道 岩 面

목 차

- 용산1리 싸리재 농로포장 _____ 도 암 면
- 도암면청사 신축공사 _____ 재 무 과
- 동계올림픽 추진상황 _____ 관광문화과
- 발왕산 개발, 시가지 배후시설 기반조성
- 화훼생산 유통지원 사업 _____ 농 정 과
- 황계시가지 하수도 정비사업 _____ 도 시 과
- 황계11리 진입로 확·포장공사 _____ 도 시 과
- 하일랜드 지하층 보수공사 _____ 도 시 과
- '96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 추진사항
- 도암면 청사 신축사업 _____ 재 무 과
- 국제트렌스 산림훼손 복구추진상황 _____ 산 립 과

농어촌 마을길 포장사업

□ 사업개요

- 시행부서 : 도 암 면
- 위 치 : 도암면 용산1리(솔봉골)
- 사업규모
 - 콘크리트포장 L=640m, B=4.0m
 - 하수도 흡관 D=600mm, L=7.5m
- 사업비 : 26,270천원(총사업비 : 26,270천원)
 - 국 비 : 도 비 : 군 비 : 26,270 자부담 :
- 사업기간 : '96. 4. 25 ~ '96. 6. 22
- 현 공 정 : 100%
- 추진상황

시행(품의)일자	입찰일자	계약일자	계약방법	계약금액(천원)
'96. 4. 19	-	'96. 4. 23	수의계약	23,087

착 공 (예정) 일자	준 공 (예정) 일자	설계변경내역(천원)			도급업체	감 독 공 무 원
		일 자	증감액	변경금액		
'96. 4. 25	'96. 6. 23	'96. 6. 3	3,183	26,270	(주) 삼양	지방토목주사보 김 남 규

※ 설계변경사유 : 특정업체 진입도로와 관련하여 주민합의 결정 건의(위치변경)에 따라 횡단 배수로 신설 → 집행잔액으로 미포장구간 40미터 연장 시공

□ 문제점 및 대책

없 음

도암면청사 신축사업

□ 사업개요

- 이행부서 : 재 무 과
- 위 치 : 도암면 횡계리
- 사업규모 : 2,028 m² (613평 : 지하1층, 지상 2층)
- 사 업 비 : 1,884,000천원
 - 균 비 : 1,884,000천원
- 시행기간 : '95. - '96
- 현 공 정 : 60 %
- 사업추진상황

시행 (품의)일자	입찰일자	계약일자	계약방법	계약금액 (천원)
'95. 4. 3	'95. 6. 15	'96. 6. 21	경쟁입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 : 1,512,950 ○ 전기 : 72,905 ○ 통신 : 30,000

착 공 (예 정) 일 자	준 공 (예 정) 일 자	설 계 변 경 내 역 (천 원)			도 급 업 채	감 독 공무원
		일 자	증 감 액	변경금액		
'96 6. 26	96. 11. 16	'96. 4. 23	158,760	2,042,7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 소방 토목:한광 ○ 전기 :강원전기 ○ 통신 :제일통신 	박용원 김남규 박상호 최현일

※ 설계변경사유

- 도암 소방파출소 신설계획으로 지하층 소방차고 및 사무실을 복지회관 식당 및 다용도 참고로 변경
- 지하 용출수 과다 및 결빙이 심한지역임을 감안 지하층 옹벽 두께 20cm를30cm로 변경
- 1층민원실의 A,B 구분된 것을 통합, 2층 대회의실 면적 54평을 76평으로 변경

□ 문제점 및 대책

- 문제점 : '96. 5. 14일 지하층의 콘크리트 타설 대부분이 부실공사로 조사판정 되었음
- 대 책 : '96. 5. 15일자로 콘크리트 타설부분 전체의 부실부분 철거후 재시공 조치함

동계 아시안게임 대비사업 추진상황

□ 사업개요

- 사업명 : 발왕산 개발
- 사업자 : (주)쌍용양회공업(대표이사 우덕창)
- 위치 : 도암면 용산리 2-15번지 일원
- 사업규모
 - 총용지 면적 : 2,454,930m² ⇒ 3,416,140.6m²
(증961,210.6m²)
 - 슬로프 확장 : 대회경기장 신설 -3면
 - 리프트 증설 : 신형3기 신설 - 구형2기 취소(증1기)
- 사업비 확보
 - 총소요 민자 78,981백만원
- 사업기간 : 착공후 30개월
- 사업추진상황
 -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 _____ '96. 5.
 - 사업계획승인 협의
 - . 사업자 ⇒ 군 _____ '96. 8. 8
 - . 군 ⇒ 도 _____ '96. 8. 26

화훼생산 유통지원사업

□ 사업개요

○ 시행부서 : 농정과

○ 위 치 : 도암면 병내리

○ 사업규모

- 유리온실 6,850평, 비닐하우스 4,440평, 저온처리실 60평
저온저장고 1동 (100평), 작업장 450평, 사무실 35평, 조직
배양실 22평, 수송차량 3대, 절화결속기 10대

○ 사업비 : 3,862,000천원

- 국비 965,500, 도비 386,200, 군비 579,300, 자담 1,931,000
(용자 1,158,600)

○ 사업기간 : '94. 4. 15 ~ '95. 6. 15

□ 문제점 및 대책

- 전반적인 시설에 대하여는 문제점은 없으나, 유리온실의 일부 시설물인 스크린, 천창, 측창 부분에 고장이 발생하여, 시공업체에 하자보수요청 하였으나, 시공업체 부도로 인하여 도산되어 보수가 지연되고 있음.
- 준공당시 하자이행보증보험에 의거 (95. 6. 15 ~ 97. 6. 14) 하자보증금 55,169,880원을 대한보증보험(주)로부터 청구하여 현재 공동명의로 예치 보관중이며, 고장부분 보수를 위하여 전문업체인 정산농원(춘천)과 계약 체결후 보수할 계획임.

횡계시가지 하수도정비사업

□ 사업 개요

- 시행부서 : 도시과
- 위 치 : 도암면 횡계리 (대관령호텔옆 도로)
- 사업규모 : 하수도시설 L = 350m
- 사업비 : 100,000천원 (총사업비 : 100,000천원)
 - 국 비 : - 도 비 : - 군 비 : 100,000 자부담 :
- 사업기간 : '96. 5. 8 ~ '97. 5. 30
- 현 공 정 : - % ('96. 6. 24 공사중지중)
- 추진상황

시행(품의)일자	입찰일자	계약일자	계약방법	계약금액(천원)
'96. 4. 2	'96. 5. 1	'96. 5. 6	경 쟁	66,036

착 공 (예정) 일 자	준 공 (예정) 일 자	설계변경내역(천원)			도급업체	감독공무원
		일 자	증감액	변경금액		
'96. 5.8	'97.5.30	-	-	-	성도건설(주) 윤 인 회	토목 7급 고 준 태

□ 문제점 및 대책

- 관로매설구간 사유토지(상지학원, 천주교) 기공승낙 협의지연
- 관로매설구간을 도시계획 도로개설 구간으로 위치변경

횡계11리 진입로 확.포장사업

□ 사업 개요

- 시행부서 : 도시과
- 위치 : 도암면 횡계리
- 사업규모 : 도로시설 L=506m, B=12m
- 사업비 : 500,000천원
 - 국비: 도비:200,000 군비:300,000 자부담:
- 사업기간 : '96. 4. 9 ~ '96. 10. 5
- 현 공 정 : 95 %
- 추진상황

시행(품의) 일자	입찰일자	계약일자	계약방법	계약금액(천원)
'96. 2. 12	'96.3.8	'96. 4. 3	일반경쟁입찰	317,998

착 공 (예정) 일 자	준 공 (예정) 일 자	설계변경내역(천원)			도급업체	감 독 공무원
		일 자	증감액	변경금액		
96. 4. 9	96.10. 5				신라건설(주)	임 광 수

□ 문제점 및 대책

-편입토지 보상비 부족 70,000천원 → 정리추진시 확보하여 보상 마무리

하일랜드 지하층 보수공사

건축물 현황

- 시 설 명 : 현대오피스텔(하일랜드 지하층 보수공사)
- 위 치 : 도암면 횡계리 325-53
- 건 축 주 : 횡계리 전 봉 주
- 현건물주 : 홍주팔외 246명
- 건축년도 : 착 공 : '90. 2
 준공일 : '92. 2
- 연 면 적 : 17,755.07㎡
- 층 수 : 19층(지하4층 지상15층)

재난위험 요소

- 지하2층, 3층(주차장) 바닥스라브 균열
- 기둥의 골재 분리

조치사항

- '96. 5. 7 행정명령 : 지하층 보완공사 완료시까지 사용중지 명령
- '96. 6. 8(고려산업개발주식회사) :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작업계획서 제출
- '96. 6. 13 : 방화설비 관련시설 보완지시로 자동방화댐퍼 설치요
- '96. 7. 19(용평하일랜드관리사무소) : 방화설비 시설보완 완료보고

지하층보수공사 계획

- '96. 10. 30일까지 완료 계획으로 현재작업중